

싱가포르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정책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트레이드 포럼 위원장

GLOBAL LEGAL ISSUES

싱가포르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정책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I. 서론	13
1.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DPA)의 의의 및 추진 현황	13
2.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목표	15
II.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	17
1.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개요	17
2.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제 및 정책	19
I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의 분석	22
1. 디지털 제품무역	22
2. 디지털 무역 기반 및 디지털 무역원활화	34
3.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46
4.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66
5. 디지털 무역 협력	84
6.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87
IV. 종합 평가 및 시사점	90
1.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디지털 경제협정 목표와 관련	90
2.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와 관련	90
3.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	91
참고문헌	97



요약

1.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디지털 경제협정 목표

-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 2017년 2월 미래경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7대 장기 성장전략 중 하나로서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자 디지털 역량 구축을 국가의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서 설정하고 추진해 왔음
 -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무역 채널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이전과는 매우 다른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싱가포르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의 디지털화(the digitalisation of trade)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대안이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국경 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경제가 미래라고 인식함
-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의 목표
 -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s: DEA)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싱가포르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들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로 보다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고자 함
 - 즉, 싱가포르 DEA의 목표는 (i) 디지털 규칙 및 표준을 조정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 및 규칙을 수립하고, (ii)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을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더불어 (iii) 디지털 신원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 싱가포르의 경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임

2.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

-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기조 및 전략
 - 2014년 출범한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는 (i) 디지털 경제, (ii) 디지털 정부 및 (iii) 디지털 사회라는 3개의 기둥에 기초하는데,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싱가포르 기업과 근로자들이 디지털화에 따른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구축해 주기 위한 것임

- 2017년 2월 7대 장기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제시한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전문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을 구축하며, 자산으로써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함
 - 디지털 기술이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번창하고 성장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 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2017년 “중소기업 디지털화(Go Digital)”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써 제시함
 - 2020년 6월 출범한 Grow Digital(디지털 성장)은 중소기업이 기업 간(B2B) 및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법인 설립 없이 해외 판매를 가능하게 해 줌
-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제 및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i)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 (ii) 제3자에 의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그리고 (iii) 데이터 보호 트러스트 마크 인증을 통해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법과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3.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의 분석

- 싱가포르는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싱가포르형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s: DEA)”을 적극 추진하여 상-호주 DEA,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영국-싱 DEA 및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등 4건의 협정을 타결하였고, 디지털 무역 규정을 포함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였음

(1) 디지털 제품무역

-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자국 주도의 DEA를 추진하면서 그 일부로써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을 일관되게 도입하여 당사자들 간에 있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교역 확대가 기대되고, 더불어 소스 코드 관련 지재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2) 디지털 무역 기반 및 디지털 무역원활화

-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 요구 이외에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위해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제도, 종이없는 무역, 특급 배송 및 물류 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표 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기반 및 원활화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국내	인터넷	전자	전자	전자	종이 없는	특송	물류
		전자거래 체계	접근·이용 원칙	인증·전자 서명	송장	지급	무역	화물	
싱가포르 주도협정	호-싱 DEA	✓		✓	✓	✓	✓	✓	
	DEPA	✓	✓		✓	✓	✓	✓	✓
	영-싱 DEA	✓	✓	✓	✓	✓	✓		✓
	한-싱 DPA	✓	✓	✓	✓	✓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		✓			✓		
	CPTPP	✓	✓	✓			✓		

출처: 필자 작성

(3)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i)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보장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또한 대상 협정에서는 그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 의무에 대한 적용 예외로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바, RCEP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라고 규정하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함
-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가 국가 본연의 주권적 권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임. 이에 비해 미국 참여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와 미-일 디지털협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데이터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제하는 국가주권 주장이 사실상 무용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한-싱 협정에서는 그러한 당사자 자신만의 규제 요건 인정에 있어 그 요건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추가 단서를 부가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 RCEP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ii) 컴퓨팅 설비의 위치

-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적용 대상인에게 당해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당사자 영역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두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RCEP을 제외한 기타 협정에서는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요건 부과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로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다만, RCEP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단을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하여 남용의 가능성 존재함
-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의 통신 주권을 확인하는 것임
- RCEP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 싱가포르의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와 달리 USMCA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당사자의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 요건 부과 인정 조항이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 조치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크게 대비되는데, 이는 미국 참여 협정에서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데이터 기반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임

(iii)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싱가포르는 호주-싱가포르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하면서 금융규제 당국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목적에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 보장을 전제로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영토 내에서의 이용이나 영토 내에 둘 것을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주도 USMCA와 미-일 디지털협정의 관련 조문을 기초로 한 것임
- 한-싱 디지털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무조항 대신에 이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발, 장려한다는 노력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iv) 공공 부문 데이터 접근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공개된 정부 정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당사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정부 정보의 경우 검색 및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이어야 할 것과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4)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 상-호주 협정을 제외한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의무조항으로써 싱가포르 타결 협정에서는 각 당사자가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채택,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DEPA

에서는 동법규 안에 소비자가 품질에 불만족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도록 요구함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의 경우 협정 모두에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人(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CPTPP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의 경우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그러한 메시지 제공자에게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것을 요구함. 또한 각 당사자는 이행해야 되는 자신의 조치를 미준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 청구 수단을 제공할 것도 규정
-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싱-호, DEPA, 영-싱, 한-싱)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

(5) 디지털 무역 협력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협력 일반 규정 이외에도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및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영-싱 협정상 핀테크 협력 조항에서는 자국에서 허용하는 모든 신규 금융서비스의 경우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이례적임

[표 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력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협력 일반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핀테크 협력
		싱가포르 호-싱 DEA	✓	✓	✓	✓
주도협정	DEPA		✓	✓	✓	✓

협정		대상 규정		협력 일반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핀테크 협력
		영-싱 DEA	한-싱 DPA					
싱가포르 주도협정	영-싱 DEA	✓	✓	✓	✓	✓	✓	✓
	한-싱 DPA	✓	✓	✓	✓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						
	CPTPP	✓						

출처: 필자 작성

(6)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특정 이슈(디지털무역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경쟁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교역 및 기회 확대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디지털무역 표준 및 적합성평가	경쟁(정책)	중소기업 (스타업)
		호-싱 DEA	DEPA			
싱가포르 주도협정	호-싱 DEA	✓	✓	✓	✓	✓
	DEPA		✓		✓	✓
	영-싱 DEA	✓	✓	✓	✓	✓
	한-싱 DPA	✓	✓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CPTPP					

출처: 필자 작성

- 생각건대 국가의 디지털 정책 및 법은 국가들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는 각국이 가진 디지털 시장의 특성 및 환경 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에도 반영되기 마련임.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미국 주도하에 추진되어 오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 추이 속에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가령, 디지털 무역원활화, AI-핀테크 등 디지털 무역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이슈)과 자국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수준(가령,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권한 명시 등) 그리고 자국 디지털 산업의 이익(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을 반영하는 ‘포괄적이면서 독자적인 디지털 경제협정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에도 많은 참고와 시사점을 제공함



I. 서론

1.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DPA)의 의의 및 추진 현황

(1)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DPA)의 의의

- 일반적으로 “디지털 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s)”이라 함은 디지털 제품 또는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가리킴. 따라서 단순히 전자적 수단을 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의미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만을 규정한 규범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 무역협정의 경우 그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음. 가령, 마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같이 별도의 독립된 문서 형태를 취할 수 있고, USMCA 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챕터(협정 제19장)와 같이 무역협정의 일부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음
- 또한 디지털 제품과 디지털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음. 가령,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 제14장은 “전자상거래”이지만 동 챕터 안에 상술한 디지털 무역규정이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동 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은 디지털 무역협정에 해당됨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상술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라는 일반적 용어 대신에 자국이 추진한 디지털 협상에서는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s: DEA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DEAs를 두 개 이상의 경제 주체들 간의 디지털 무역규범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확립하는 조약으로 정의함.¹⁾ 이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주목됨

(2)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추진 현황

- 2022년 9월 기준 싱가포르가 타결한 디지털 협상은 4건임

(i)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협정(Singapore-Australia Digital Economy Agreement:

1) MITI Singapore, What are Digital Economy Agreements (DEAs)?,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SADEA’ 또는 ‘싱-호(주)DEA’²⁾)은 2020년 8월 6일 서명하여 2020년 12월 8일 발효하였고,

(ii) “싱가포르, 칠레 및 뉴질랜드 간의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³⁾)은 싱가포르 정부가 2019년 5월 제안하여 협상이 진행되었고, 2021년 6월 12일 서명하여 2020년 12월 28일 발효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2021년 10월 DEPA에 가입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전달하여 현재 가입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iii)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United Kingdom-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⁴⁾): UKSDEA 또는 ‘영(국)-싱 DEA’⁵⁾)은 2021년 6월 28일 협상을 개시하여, 2021년 12월 9일 타결되었고, 2022년 6월 14일 발효되었으며,

(iv)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KSDPA’ 또는 ‘한-싱DPA’)은 2020년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2021년 12월 15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현재 정식 서명 및 발효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임. 또한 싱가포르는 앞으로 자국과의 디지털 경제협정에 동조하는 경제 주체들과의 협정 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표함⁶⁾)

- 한편, 싱가포르는 (i) ASEAN의 회원으로서 ASEAN이 2019년 타결한 “ASEAN 전자상거래협정”(ASEAN Agreement on Electronic Commerce)⁷⁾)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2021년 12월 3일 발효하였고, (ii) 미국 주도로 타결되었던 TPP를 대체하여 2018년 12월 30일 발효된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에 참여하였으며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와 (iii) 2020년 11월 타결되어 2022년 1월 1일 발효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회원으로서 RCEP도 제12장(전자상거래)⁸⁾)이 포함되어 있는바, 상기 3건 모두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외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규정(노력조항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분류될 수 있음

2) SADEA Text, file:///C:/Users/USER/Downloads/Singapore-Australia%20Digital%20Economy%20Agreement.pdf.

3) DEPA Text, file:///C:/Users/USER/Downloads/Digital%20Economy%20Partnership%20Agreement.pdf.

4) 동 협정은 공식 명칭은 “Digital Econom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임.

5) UKSDEA text, file:///C:/Users/USER/Downloads/2022-02-25%20-%20UK-Singapore%20Digital%20Economy%20Agreement%20(1).pdf.

6) MITI Singapore, What are Digital Economy Agreements (DEAs)?,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7) 동 협정 텍스트는 <https://agreement.asean.org/media/download/20190306035048.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8) 동 협정 제12장 텍스트는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rcep/doc/eng/1/23%20Chapter%2012.pdf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목표

(1)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 싱가포르는 1980년대부터 정보통신기술(ICT)을 미래의 전략적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추진해왔음. 또한 2014년 11월 리셴룽 총리는 국가 정보화 전략의 최신판이자 사회문제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 성장정책인 ‘스마트국가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발표하였음. 그리고 2017년 2월 미래경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7대 장기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전략 4: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이 포함되어 있음.⁹⁾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일찍이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자 디지털 역량 구축을 국가의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설정하고 추진해 왔음
- 그렇지만 COVID-19 사태를 계기로 높은 글로벌 무역 의존도에 따른 싱가포르 경제의 외부 충격 취약성이 노출되자 리셴룽 총리는 2020년 8월 이제 개방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전의 글로벌 경제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 새로운 무역 채널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이전과는 매우 다른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¹⁰⁾
- 이에 싱가포르 정책 입안자들은 무역의 디지털화(the digitalisation of trade)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대안이 바로 전자상거래 확대와 금융권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그리고 모바일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경 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기로 하는 것임
- 즉, 그들은 디지털 경제가 미래라고 인식함. 특히 COVID-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화와 기술 재편(technological disruption)은 소비자 행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는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도달할 수 있도록 함. 운송에서 금융, 원격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갖춘 플랫폼과 앱이 등장하면서 서비스 소비 방식이 바뀜. 또한 기업들은 소싱부터 송장 발행 및 결제에 이르기까지 전자거래와 디지털 솔루션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음. 안전하고 막힘없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봄¹¹⁾
- 그런데, 무역의 디지털화는 데이터의 현지화 의무나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제약을 받게 됨. 또한 데이터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규칙들에서의

9) 김미림, “싱가포르의 성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5, 2018, p.12,14,18.

10) KITA 통상뉴스, 디지털 무역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싱가포르, 2020-09-29(출처: Financial Times).

11) MITI Singapore, Why are DEAs important for Singapore?,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파편화된 규제는 개인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상이한 제한을 초래하고 그 준수 비용을 증가시키기 마련임¹²⁾

(2)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의 목표

- 상술한 배경에서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협정(DEA)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싱가포르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들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로 보다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고자 함
- 즉, 싱가포르 DEA의 목표는 (i) 디지털 규칙 및 표준을 조정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 및 규칙을 수립하고, (ii) 국경 간 데이터의 이전을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더불어 (iii)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 싱가포르의 경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며, 해외 시장에 보다 원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¹³⁾
- 이밖에도 싱가포르 DEA는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및 기타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더불어 WTO에서의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한 전자상거래(E-Commerce) 논의를 위한 공동 발의(Joint Initiative) 공동 제안자로서 싱가포르의 리더십 역할을 보완함

12) MITI Singapore, Why are DEAs important for Singapore?,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13) MITI Singapore, Why are DEAs important for Singapore? and How can businesses benefit from the DEAs?,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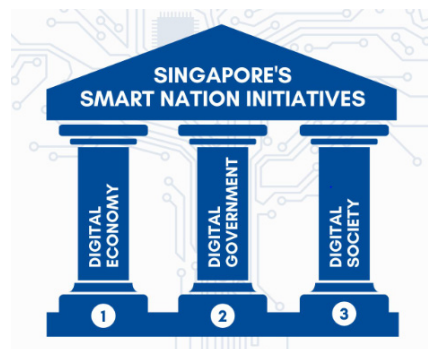
II.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

1.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개요

(1)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기조 및 전략

- 4차 산업혁명의 결과 디지털, 물리적 및 생물학적 분야들 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음. 이러한 변화는 무수히 많은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고 개인, 국가 나아가 글로벌 수준에서 스마트 기술 채택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하여 주었음. 이에 싱가포르는 2014년 4차 산업혁명이 도입한 기술을 활용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Smart Nation Initiatives)”를 출범시켰음
-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는 총 요소 생산성 증대, 싱가포르 국민 삶의 개선과 내국인 인재 유지 및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였고, (i) 디지털 경제, (ii) 디지털 정부 및 (iii) 디지털 사회라는 3개의 기둥에 기초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i)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싱가포르 기업과 근로자들이 디지털화에 따른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구축해주기 위함이고, (ii)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는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 추진 동력으로서 데이터, 컴퓨팅 및 연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식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을 혁신하기 위함이며, (iii) 디지털 사회(Digital Society)의 구축을 위해서는 디지털 포용과 교육이 관건인바, 디지털 사회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역량을 개발해주고 모든 주체들에게 디지털 기술에의 동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¹⁴⁾

[그림 1]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의 3대 기둥



출처: <https://www.scs.org.sg/articles/smart-nation-singapore>

14) SINGAPORE SMART NATION INITIATIVES AND POSSIBLE OPPORTUNITIES, <https://www.scs.org.sg/articles/smart-nation-singapore>.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싱가포르의 2017년 2월 미래경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7대 장기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전략 4: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i) 전문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Hel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dopt digital technologies) 특히, 교역·물류 IT 생태계 구축을 위한 National Trade Platform과 온라인 결제 사회 구현을 위한 National Payments Council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도록 함
 - (ii) 산업계와 공동 실험실(Joint Laboratories)을 설립·운영하여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을 구축하며(Build deep capabilities in data analytics and cybersecurity) (iii) 미래경제위원회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산업계와 함께 선도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flagship data science projects)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자산으로써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Harness data as an asset) 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함¹⁵⁾

(2) 사례: 싱가포르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사업

- 싱가포르에서 중소기업은 경제의 핵심으로서 노동력의 2/3를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디지털 기술이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번창하고 성장할 기회를 포착해야 함. 이러한 배경에서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이 2017년 4월 시작한 “중소기업 디지털화(Go Digital)”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 함¹⁶⁾
- “산업 디지털 플랜(Industry Digital Plan: IDP)”은 디지털 채택 및 교육에 대한 부문별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특정 분야(sector-specific) IDP는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직원 대상 교육을 채택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IDP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통의 참고 자료로써 가능하며 각 분야의 산업 전환 맵과 연계되어 있음. IMDA는 소매, 물류(항공운송 포함), 환경 서비스, 보안, 식품 서비스, 도매 무역, 미디어, 해상 운송, 회계, 호텔, 건설 및 시설 관리, 훈련 및 성인교육, 육상 교통, 음식 제조, 해양엔지니어링, 에너지·화학 및 정밀 엔지니어링 부문에 있어 IDPs를

15) 김미림,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CFE), 2017, p.14.

16)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출시했고, 향후 다른 부문에서의 IDPs도 추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임. 참고로 2022년 3월 기준 8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음¹⁷⁾

- Enterprise Singapore(ESG)와 함께 IMDA는 2019년 1월 ‘Start Digital(디지털 출발)’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는데, Start Digital은 새로 편입된 중소기업과 아직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그들의 자연스런 접점인 은행 및 통신회사를 통해 기본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¹⁸⁾
- 2020년 6월 공식 출범한 Grow Digital(디지털 성장)은 IMDA와 ESG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니셔티브로서 중소기업이 기업 간(B2B) 및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하여 (현지) 법인과 같은 실체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해외에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줌
 - IMDA와 ESG가 사전 승인하는 이들 플랫폼은 이들의 보완적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업체(예: 물류 및 금융 등)와의 강력한 네트워크, 우수한 실적 및 여러 해외시장에서의 운영 경험으로 선정됨.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은 잠재적인 해외 고객과 연결하는 스마트 매칭으로 해외시장 노출 증가, 해외 e-마켓플레이스에 최적화된 목록, 플랫폼을 통해 금융 제공에 대한 신속한 액세스, 통화 위험을 완화하는 국경 간 전자결제 시스템, 최종 배송 담당 물류 회사와 같은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역량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¹⁹⁾

2.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제 및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법과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바, (i)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 (ii) 제3자에 의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그리고 (iii) 데이터 보호 트러스트 마크 인증이 그러함

(1)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

-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는 “공공부문(거버넌스)법(Public Sector (Governance) Act: PSGA)” 및 “정보통신 기술 및 스마트 시스템 관리에 관한 정부 지침 매뉴얼(Government Instruction Manual on Infocomm Technology & Smart Systems Management: ICT/SS 관리 매뉴얼)”에 의해 규율하고, “개인 데이터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PDPA)”은 민간 부문에 적용됨

17)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Factsheet, 2022.3,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18)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Factsheet, 2022.3,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19)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Factsheet, 2022.3,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 이와 같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데이터 관리를 규율하는 두 개의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임. 정부는 개별 기관을 넘어 통합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기대됨. 이에 비해 각 민간 부문 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서로 다른 민간 부문 기관들에 걸쳐 정부에서와 유사하게 통합된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기대가 없음²⁰⁾
- 2001년부터 정부의 데이터 보안 정책은 ICT/SS 관리 매뉴얼에 수립되어 있음. 동 매뉴얼에서는 정부가 보유 또는 통제하는 데이터(개인 데이터 포함)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함. 2018년에는 공공부문 데이터 거버넌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거버넌스)법(PSGA)이 제정되었음. PSGA는 (a) 허가 없이 고의 또는 무분별하게 자료를 공개하는 (b) 데이터를 오용하여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초래하는 그리고 (c) 허가 없이 익명화된 정보를 고의 또는 무분별하게 재식별하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 처벌을 부과함²¹⁾
- 2019년에 “공공 부문 데이터 보안 검토 위원회(Public Sector Data Security Review Committee: PSDSRC)”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기술 및 프로세스 조치를 권고함. 이러한 권고 조치는 이후 ICT&SS 관리 매뉴얼에 통합되고 기관들의 데이터 보안 관리 방법을 제시함. 데이터 보안 정책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및 프로세스 제어를 포함한 데이터 보안 요건들을 규정함²²⁾
-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라는 PSDSRC 권고의 일환으로, 정부는 2020년에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정책 및 표준을 Smart Nation 사이트에 게시하기 시작했음²³⁾

(2) 제3자에 의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 정부는 (정부)기관들(Agencies)²⁴⁾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을 계획하고 분석하기 위해 제3자(Third Parties)와 광범위하게 협업하는 것을 인정함. 그렇게 할 때, 이들 제3자들이 정부의 대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됨. 따라서, 정부가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이터 보호의 높은 기준이 이들 제3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²⁵⁾

20) Smart Nation Singapore, Government'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p.1-2.

21) Id., p.2.

22) 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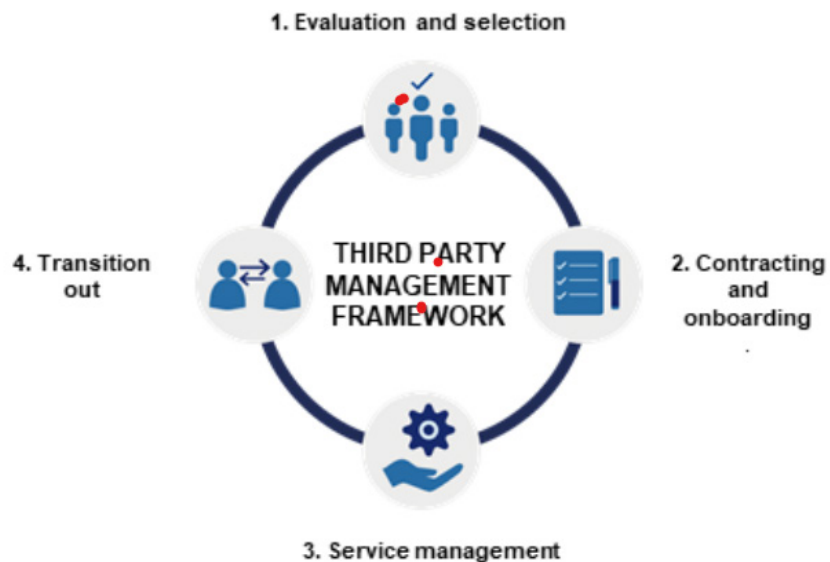
23) Id.

24) 여기서 기관(Agency)이라 함은 국가기관, 각 부처, 기타 부서 및 법정 위원회를 가리킴.

25) Smart Nation Singapore, Government'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p.3.

-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정부)기관에게 ICT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정부)기관에 전달, 개발, 구현, 운영, 제공 또는 달리 공급하거나,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수집, 저장 또는 달리 처리하는 데이터 주체(data subject)²⁶⁾나 (정부)기관(Agency) 이외의 다른 당사자로서 정의됨²⁷⁾
-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제3자가 데이터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정부)기관들을 안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음. 이러한 정책은 평가 및 선택, 계약 및 온보드(onboarding), 서비스 관리 및 전환 아웃 등으로 이뤄진 (정부)기관과 제3자 간의 관계의 라이프사이클을 기반으로 입안됨. 제3자와 협업할 때, (정부)기관은 정부의 데이터 보안 정책에 기초하여 제3자 각자가 준수해야만 하는 데이터 보안 요건을 정하게 됨²⁸⁾

[그림 2] (정부)기관과 제3자 간의 관계의 라이프사이클



(3) 데이터 보호 트러스트 마크 인증

- 데이터 보호 트러스트 마크(DPTM) 인증은 기관의 데이터 보호 관행을 검증하는 전사적(全社的)인 자율 인증임. 개인데이터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PDPC)와 IMDA가 공동으로 개발한 DPTM은 시민의 개인 데이터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가 강력한 데이터 보호 관행을 가지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임. 또한 DPTM은 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개인데이터보호법(PDPA) 및 IM8 개인 데이터 보호 정책 및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줌²⁹⁾

26) 데이터 주체라 함은 당해 데이터와 관련있는 개인 또는 실체를 가리킴.

27) Smart Nation Singapore, Government'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p.6 n.1.

28) Id., p.4.

29) Id., p.5.

I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의 분석

- 본 장에서는 대내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디지털 역량 구축을 국가 핵심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싱가포르형 디지털 경제협정(DEA)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싱가포르가 그간 주도하여 타결한 상호주 DEA, DEPA, 영국-싱 DEA 및 한-싱 DPA 등 4건의 협정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함
 - 싱가포르가 단지 참여한 RCEP 전자상거래챕터(제12장)와 CPTPP 제14장은 제한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³⁰⁾ 비교 분석을 위하여 디지털 무역 규정을 내용상 다음의 6개 분야 즉, (i) 디지털 제품무역, (ii) 디지털 무역 원활화, (iii)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iv)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v) 디지털 무역 협력 및 (vi)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함
- 상술한 각 분야별 관련 규정 분석은 조문별로 (i) 당해 조문의 의의 및 배경을 살펴보고, (ii) 당해 조문에 관한 분석 대상 4개 협정에서의 조문 내용을 소개하고, (iii) 이들 4개 협정에서의 조문들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며, 필요한 경우 RCEP 및 CPTPP 협정의 전자상거래챕터 관련 조문과 비교 평가하고자 함. 다만,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등 일부 분야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USMCA 및 마일 디지털 무역협정)을 포함하여 비교 평가하고자 함

1. 디지털 제품무역

(1) 관세

(i)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의의 및 배경

-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customs duties)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무역장벽이고, 디지털 제품무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관세장벽의 철폐가 일차적 과제가 될 것임. 이 점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그러한 디지털 제품무역에 대한 관세 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무관세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30) 싱가포르가 참여한 ASEAN 전자상거래협정은 싱가포르가 주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규범 수준이 낮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RCEP과 CPTPP는 싱가포르가 주도한 협정이 아닌 관계로 제한적으로만 비교하였음.

- 이와 관련 1998년 5월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이하 ‘1998년 (전자상거래) 각료선언)’”에서는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관세 면제 관행을 유예한다(duty-free moratorium)고 규정하고 달리 디지털 제품을 언급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1998년 각료선언에 언급된 “전자적 전송”은 엄밀히 말하면 행위로서 통신서비스에 해당되며, 객체로서의 상품이 아님. 따라서 전자적 전송이라는 행위에 대한 관세 면제 관행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지난 1998년 각료선언에서 한시적인 관세 유예 대상으로서 디지털 제품 대신에 전자적 전송을 명기한 것은 디지털 콘텐츠(digital contents)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의 해묵은 견해 대립을 봉합하기 위한 절충적 시도의 결과이었기 때문임. 즉, 과거 플로피 디스크나 CD 등 물리적 매개체를 통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던 디지털 재화는 상품무역의 규율 대상이었음. 그런데 인터넷의 출현 이후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재화도 계속 상품무역협정인 GATT의 규율 대상인가를 둘러싸고 미국과 EU의 입장이 대립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술 중립성을 강조하는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재화의 국경 간 무역 역시 GATT의 규율 대상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EU는 그러한 디지털 재화 자체는 무형재로서 그 자체는 상품이 아니며 유형재인 물리적 매개체에 내장된 관계로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그러한 디지털 재화가 더 이상 유형재에 내장되지 않고 당초의 무형재 형태로 유지되면서 통신서비스인 인터넷 전송과 결합하여 국경 간 거래되는 경우는 서비스무역의 일부로서 파악해야 하고 따라서 더 이상 GATT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함
- 이와 같이 디지털 재화는 국가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점에서 독특한 재화라고 할 수 있음. 즉, CD 등과 같이 물리적 전달 매체를 통해 국경 간 거래되는 경우 상품무역으로 분류하려 할 수 있고(미국 입장), 인터넷을 통해 국경 간 거래되는 경우 서비스무역으로 분류(EU 입장)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입장 차이는 EU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사회문화적 관점을 중시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보의 대상으로 보는 반면에 미국은 경제적 관점을 중시하여 이를 무역자유화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임. 따라서 양자 간의 타협은 쉽지 않은 과제임. 다만, 후자와 같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재화를 서비스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디지털 재화의 전송이 어떠한 서비스 분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아직 없음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규정 현황

- 먼저 싱가포르가 참여한 RCEP을 제외한 다른 기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5건에서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이에 비해 RCEP에서는 그러한 무관세 대우 기준 관행을 유지하되, 이는 향후 이에 관한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그러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대우 규정이 당사자가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조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예외없이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호-싱DEA와 RCEP 및 CPTPP에서는 그러한 조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포함하고 있음에 비해 DEPA, 영-싱과 한-싱 협정에서는 그러한 단서 조항이 없음

[표 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규정 비교

협정	조문
호-싱 DEA	<p>제5조 관세(customs duties)</p> <p>1. 어떠한 당사자도 한쪽 당사자의 인(인)과 다른쪽 당사자의 인(인) 간의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p>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p>
DEPA	<p>제3.2조 관세(customs duties) (호-싱 관련 규정과 동일)</p>
영-싱 DEA	<p>제8.59조 관세(customs duties)</p> <p>1. (호-싱 관련 규정과 동일)</p> <p>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u>콘텐츠(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u></p>
한-싱 DPA	<p>제14.5조 관세(customs duties) (호-싱 관련 규정과 동일)</p>

협정	조문
RCEP	<p>제12.11조 관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자는 당사자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신의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은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에 관한 「2017년 12월 13일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WT/MIN(17)/65)」에 따른다. 3.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의 틀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에서의 모든 추가적인 결과와 관련하여 제1항에 언급된 자신의 관행을 조정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결정에 비추어 이 조를 검토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조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자가 전자적 전송에 대하여 그러한 조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PTPP	<p>제5조 관세(customs duties) (호·싱 관련 규정과 동일)</p>

출처: 필자의 관련 협정문 번역본을 기초로 작성

(iii) 평가

- 첫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대우는 WTO 1998년 각료선언 이후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왔고,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12차 각료회의에서는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2023년 12월 개최될 예정인 차기 각료회의가 만약의 경우 2024년 3월까지 개최되지 못한다면, WTO 일반이사회 또는 각료들이 별도의 모라토리엄 연장 결정을 취하지 않는 이상 모라토리엄은 종료된다³¹⁾고 명시하고 있어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수도 있음
 - 이에 비추어 RCEP을 제외한 싱가포르의 기타결 5건의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대우의 명시는 달리 적용 기한의 제한이 없는 관계로 당사자들 간에 있어 항구적 무관세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 점에서 RCEP은 향후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무관세 관행이 종료될 수 있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둘째,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무관세 대우의 대상을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s)”으로 명시하고 있어 EU의 입장에 따라 전자적 전송을 서비스무역으로의 해석 여지를 남겨 두고 있음. 이 점에서 미국이 주도한 USMCA의

31) WT/MIN(22)/32, WT/L/1143,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DECISION, 22 June 2022.

디지털 무역 챕터에서 처음으로 무관세 대상을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으로 명시³²⁾하고 있는 것과 구별됨

- 셋째, 호-싱, DEPA 및 한-싱 협정과 CPTPP에서는 무관세 대우의 적용 예외 대상으로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 내국세나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관세 대우 적용 대상인 전자적 전송에 비해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주목됨
- 이에 비해 영-싱과 RCEP에서는 각기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content transmitted electronically)를 포함하여 전자적 전송으로 그 대상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이외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과세 등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과세 실효적 관점에서 양자 간의 큰 차이가 없어 보임

(2)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i)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의 의미

-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non-discriminatory treatment)라 함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MF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를 포함하는 개념인바, 전자의 MFN대우는 어느 특정 당사자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만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일이 없이 모든 당사자들의 디지털 제품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함을 가리키고, 후자의 NT는 다른 당사자의 디지털 제품을 내국산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됨을 가리킴
- 이러한 디지털 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 금지는 그러한 디지털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국내의 디지털 제품들 간의 비차별 대우는 공정한 경쟁 환경의 보장을 위한 핵심 원칙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규정 현황

- 먼저 싱가포르의 기타결 호-싱, DEPA 및 한-싱 협정과 CPTPP에서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면서 비차별 대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대해 함께 규정함
- 이에 대해 영-싱 협정 및 RCEP에는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32) USMCA 제19.3조: 관세

1. 어떤 당사국도 한쪽 당사자의 인과 다른쪽 당사자의 인(인) 간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수입이나 수출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관세나 기타 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표 5]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규정 비교

협정	조문
호-싱 DEA	<p>제6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창작, 제작, 출시, 계약, 위탁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 사용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제품(a digital product) 또는, 다른쪽 당사자가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a digital product)에 대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들 (other like digital products)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은 TRIPS 협정이나 제13장(지적재산)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이 조가 정부 지원 대출,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무상교부(gran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이 조는 방송에 적용되지 않는다.
DEPA	<p>제3.3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호-싱 제6조와 같은 내용 규정. 단, 비교 대상인 최초 사용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제품과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이 모두 복수인 digital products로 표현된 점이 다름.)</p>
영-싱 DEA	규정 없음
한-싱 DPA	<p>제14.6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호-싱 제6조와 같은 내용 규정)</p>
RCEP	규정 없음
CPTPP	<p>제14.4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창작, 제작, 출시, 계약, 위탁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 사용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제품들 또는, 다른쪽 당사자가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인 디지털 제품들에 대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들(other like digital products)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주) <p>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당사자(non-Party)의 디지털 제품이 “동종의 디지털 제품”(like digital product)이라면 본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other like digital product)의 자격을 가진다.</p> <p>2항-4항 (호-싱 제6조 2-4항과 같은 내용 규정)</p>

출처: 필자의 관련 협정문 번역본을 기초로 작성

(iii) 평가

- 먼저 적용 대상인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의 정의를 살펴보면, DEPA, 한-싱 협정 등에서는 “디지털 제품이란 상업적 판매나 유통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암호화되거나 생산되고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소리 녹음이나 기타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함.³³⁾ 다만, 한-싱과 CPTPP 협정 등에서는 각주를 통해 화폐를 포함한 금융수단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상화한 것(digitised representation)은 디지털 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³⁴⁾
- 또한 디지털 제품의 정의와 관련하여 한-싱 및 CPTPP협정 등에서는 “디지털 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 제품무역이 서비스무역으로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각주를 통해 명시하고 있어 주목됨. 이는 당사자에 따라서는 디지털 제품무역이 서비스무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다음으로 호-싱, DEPA 및 한-싱 협정과 CPTPP에는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조문을 두면서 동 조문 1항에서 당사자는 다른쪽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창작, 제작된 디지털 제품이나 다른쪽 당사자가 그 저작자, 제작자 등인 디지털 제품에 대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들”(other like digital products)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그러한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이 NT와 관련하여 당해 당사자의 것(즉, 내국산)이나 MFN 대우와 관련하여 다른쪽 당사자의 것 나아가 비당사자(non-Party)의 것도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의 원산지 대상 국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문언해석에 따르면 상술한 모든 대상 국가의 제품이 동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NT와 MFN 대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는 CPTPP협정 제14.4조 1항 각주에서 동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비당사자(non-Party)의 디지털 제품이 “동종의 디지털 제품”(like digital product)이라면 본 항의 목적상 “다른 동종의 디지털 제품”(other like digital product)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당사자의 것까지 포함됨을 명시한 것에서도 뒷받침됨
- 셋째,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를 규정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그러한 비차별 대우의 적용 배제 경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i) 당사자인 국제협정상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한도, (ii) 당사자 제공 보조금이나 무상교부 및 (iii) 방송을 동일하게 규정함. 여기서 방송은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짐

33) DEPA 제3.1조, 한-싱 제14.1조.

34) CPTPP 제14.1조 각주2), 한-싱 제14.1조 각주 14.1).

(3)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i)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관련 일정한 조건 부과 금지 의의 및 배경

- 먼저 IT(Information Technology)가 ‘정보기술’, 즉 정보의 수집, 가공, 유통, 소비 등 정보 전반을 다루는 기술이라면, 정보를 가공, 유통하는 데 통신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통신’이 추가 내지 결합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가리키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 및 비중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음
 - ICT는 인공지능(AI), 5G, 메타버스 등 상호 간 정보 공유를 비롯해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망라하여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한 ICT를 접목해 개발된 제품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바, ICT 제품군에는 다수의 전자제품이 해당되며 특히 정보·통신·방송기기와 그 부품이 포함됨. 오늘날 ICT 산업 지표의 성장세가 증대하면서 ICT 제품 수출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³⁵⁾
- 이러한 ICT 제품 중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은 한편으로 암호 기술이 갖는 특성상 또는 용도상 국가 안보와 자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다른 한편으로 가입자의 인증 및 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음. 대표적인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으로는 이동통신용 휴대폰, 방송용 셋톱박스(setup box), 금융거래용 금융상품 등이 있음
- 그런데, 국가가 상업용인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 암호 알고리즘 등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특정인과 파트너가 되게 한다든지, 특정 기술 등을 이전시키게 한다든지 또는 특정 기술로의 접근권을 강제로 제공하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민간 영역을 제약하는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부과할 경우 이는 그러한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의 국경 간 거래에 있어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상품무역의 핵심 대상인 그러한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의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조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미국 주도 FTA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 현황

- 먼저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호-싱, DEPA, 영-싱 및 한-싱 협정에서는 모두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에 대해 규정하여 왔음

35) 2020년 기준 세계 상품 수출에서 ICT 제품 수출 비중은 14.3%를 차지하였음.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X.VAL.ICTG.ZS.UN\(2022.10.1.방문\)](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X.VAL.ICTG.ZS.UN(2022.10.1.방문)). 참고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ICT 제품 수출액이 2,000억달러를 넘어섰음.

- 이에 대해 RCEP과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 안에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이 없음. 다만, CPTPP의 경우 동 협정 제8장(무역기술장벽) 제8.13조(부속서) Annex 8-B(정보통신기술제품)에서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표 6]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 대우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7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DEPA	제3.4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
영-싱 DEA	제8.61-J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상업용 정보통신기술제품
한-싱 DPA	<p>제14.18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p> <p>1. 이 조의 목적상,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란 암호문을 생성하기 위하여 키와 평문을 결합하는 수학적 절차 또는 공식을 말한다. “암호 기법”이란 정보 내용을 숨기고 은밀한 수정을 방지하거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원칙, 수단 또는 방법을 말하고 하나 이상의 비밀 매개변수(예를 들어 암호 변수) 또는 관련된 키 관리를 사용한 정보의 변환으로 제한된다. “암호화”란 데이터(“평문”)를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용을 통하여 후속적인 재변환(“암호문”) 없이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키”란 키를 알고 있는 주체는 작업을 재현하거나 뒤바꿀 수 있지만 키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작업을 결정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말한다.</p> <p>2. 이 조는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제품에 적용된다.14-10) 14-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p> <p>3. 암호 기법을 사용하고 상업적 응용을 위하여 설계된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을 조건으로 다음을 요구하는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부과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인에게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소유하고 제품의 암호 기법에 관련된 특정한 기술, 생산 공정 또는 그 밖의 정보(예를 들어 개인 키 또는 그 밖의 비밀 매개변수, 알고리즘 사양 또는 그 밖의 설계 세부 사항)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나. 자국 영역에 있는 인과 동업한다. 또는</p>

협정	조문
한-싱 DPA	<p>다. 그 당사국 정부에 의한 또는 그 당사국 정부를 위한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경우는 제외하고, 특정한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한다.</p> <p>4. 제3항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p> <p>가. 중앙은행의 것을 포함한 당사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요건, 또는</p> <p>나. 금융기관 또는 시장과 관련된 감독, 조사 또는 검토 권한에 따라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p> <p>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당사국의 법 집행 및 규제 당국이, 그들이 통제하는 암호화를 사용하는 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RCEP	규정 없음
CPTPP	[협정 제8장(무역기술장벽) 제8.13조(부속서) Annex 8-B(정보통신기술제품)]

출처: 필자가 관련 협정문을 기초로 작성

(iii) 평가

- 먼저,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상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의 핵심은 어떠한 당사자도 ICT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상업용 ICT 제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에게 (i) 암호 기법과 관련된 모든 전송적 정보를 그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는 인에게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ii)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유통, 수입 또는 사용에 있어 해당 당사자의 영토에 있는 인과 동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력할 것 또는 (iii) 특정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암호를 사용하거나 통합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
- 또한 동 규정은 강제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상업용으로 설계된 암호를 사용하는 ICT 제품과 관련 정부 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암호 관련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제품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기술 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당연히 이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³⁶⁾ 따라서 동 규정은 당사자들 간에 있어 상업용 ICT 제품의 교역에 대한 기술장벽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됨
- 그렇지만, 상기 규정이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에 대하여 기타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등의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를 적용하거나

36) 호-싱 제7조3항; DEPA 3.4조3항; 영-싱 8.61-J조2항; 한-싱 14.18조2항.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됨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은 상업용 ICT 제품(a commercial ICT product)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명시하고 있음. 특히 영-싱 협정에서는 조문의 명칭³⁷⁾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상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에서는 동 규정은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와 정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에 관한 요건 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 조사 또는 검사 당국에 따른 조치 등 정부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³⁸⁾ 특히, 한-싱 협정에서는 이 조의 목적상 “제품”은 상품이며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음을 추가로 명기하였는데³⁹⁾ 이는 국민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싱가포르 협정들에서는 본 규정에서 법 집행 당국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암호를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
- 셋째, 싱가포르는 자국 주도의 DEA를 추진하면서 그 일부로써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을 일관되게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은 미국 주도 FTA에서 상품무역 FTA의 일부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챕터’ 또는 동 부속서의 일부로써 도입되었고 이후 FTA와는 별도의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동 규정을 디지털 무역협정안에 도입⁴⁰⁾하게 되었는데, 싱가포르가 그러한 미국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4)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i)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의의 및 배경

- 먼저 ‘소스 코드’(source code)란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제작에 사용되는 설계 파일(설계도)이자 재료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어느 기업이 해외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당해 기업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나 전용 알고리즘 또는 기타 지재권을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요구받게 된다면, 당해 기업은 자사 지식재산인 소스 코드의 유출을 우려하여 해당 시장에 진출을 포기할 수 있게 될 것임⁴¹⁾

37) 제8.61-J조 암호 기법을 사용하는 상업용 정보통신기술제품.

38) 호-싱 제7조4항; DEPA 3.4조4항; 영-싱 8.61-J조1항; 한-싱 14.18조3항.

39) 한-싱 14.18조 각주 14-10.

40) 마-일 디지털 무역협정 21조.

41) CRS,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CRS 2019), May 21, 2019, p.17.

- 이와 같이 소스 코드 이전 요구 등은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제품의 국경 간 거래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소프트웨어 강국인 미국은 자국 주도 FTA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부과 금지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음⁴²⁾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규정 현황

- 먼저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호-싱, 영-싱 및 한-싱 협정에서는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에 규정하고 있음. 다만, DEPA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에는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RCEP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표 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소스 코드 이전 등 요건 금지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28조 소스 코드
DEPA	관련 규정 없음
영-싱 DEA	제8.61-K조 소스 코드
한-싱 DPA	<p>제14.19조 소스 코드</p> <p>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이전이나 그에 대한 접근, 또는 그 소스 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에 대한 접근을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소프트웨어 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유통, 판매 또는 사용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p> <p>2. 이 조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 기관, 법 집행 기관, 규제기관 또는 사법당국 관련 기관이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장치를 조건으로, 수사, 검사, 조사, 집행 조치 또는 사법 절차나 행정 절차(14-11)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또는 그 소스 코드에 표현된 알고리즘을 보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p> <p>14-11) 그러한 공개는 영업 비밀 소유자가 영업 비밀로써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p>
RCEP	규정 없음
CPTPP	제14.17조 소스 코드

출처: 필자가 관련 협정문을 기초로 작성

42) 미국 주도하에 타결되었던 TPP협정 14.17조에 도입되었고, 이후 USMCA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도 규정되었음.

(iii) 평가

- 먼저, 싱가포르 주도 호-싱, 영-싱 및 한-싱 협정과 CPTPP협정에서는 타방 당사자의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이전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자국 영토에의 수입, 유통, 판매 요건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규정은 소프트웨어 내장 상품의 교역 및 유통과 관련된 기술규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당사자들 간에 있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교역 확대가 기대되고, 더불어 소스 코드 관련 지적권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됨
- 다만, 호-싱, 영-싱 및 한-싱 협정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정부기관, 규제기관 또는 사법당국이 타방 당사자의 인에게 조사, 검사, 시험, 집행 조치 또는 사법이나 행정 절차를 위해, 관련 기관이 무단 공개에 따른 보호조치(safeguards)의 적용을 조건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보존하거나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비해 CPTPP에서는 특허 신청이나 승인된 특허에 관한 요건 또는 특허에 관한 법원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외 사유를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⁴³⁾

■

2. 디지털 무역 기반 및 디지털 무역원활화

-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이 요구되고 나아가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위한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제도, 종이없는 무역, 특급 배송 및 물류 등 대응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반 이슈들에 원칙 및 규율과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점에서 본항에서는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국내 전자거래 체계

(i) 국내 전자거래 체계의 의의

- 디지털 무역 특히 전자상거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적 체계의 수립이 전제됨. 다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국가들 간에 통일적인 법체계의 수립이 필요하게 됨

43) CPTPP 제14.17조4항.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표 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8조 국내 전자적 거래(Domestic Electronic Transaction) 체제 (한-싱 관련 규정 상응)
DEPA	제2.3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항 - 3항(한-싱 관련 규정 상응)
영-싱 DEA	제8.60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및 전자계약 1항-3항 (한-싱 관련 규정 상응) 4. 자국의 국내법에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근거만으로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 법적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5. 디지털 거래에 대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는 제4항에 언급된 상황의 목록을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웹사이트에 유지한다. 6. 전자계약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각 당사자는 제5항에 언급된 목록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한-싱 DPA	14.7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 또는 2005년 11월 2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계약의 전자통신 이용에 관한 유엔협약」의 원칙과 합치되게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거래에 대한 모든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나.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을 채택한다. 그리고 다.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적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원활하게 한다.
RCEP	제12.10조 국내 규제의 틀 (한-싱 관련 규정 상응. 단, 한-싱 2항나호 및 다호 없음)
CPTPP	제14.5조: 국내 전자상거래 체제 (한-싱 관련 규정 상응. 단, 한-싱 2항나호 없음)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2)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규정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관련 규정 없음
DEPA	제6.4조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한-싱 관련 규정 상응. 단, 각주 비규정)
영-싱 DEA	관련 규정 없음
한-싱 DPA	제14.24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근과 이용에 관한 원칙 각국의 적용 가능한 정책,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양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소비자의 이익을 인정한다. 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조건으로, 인터넷상에서 이용가능하며 소비자가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14-12) 14-12) 양 당사국은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특정한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접근 서비스공급자는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다. 나.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선택한 최종이용자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다. 소비자의 인터넷 접근 서비스공급자가 보유한 네트워크 관리 관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	제14.10조: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원칙 (한-싱 관련 규정 상응. 단, 각주 비규정)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3)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i)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의 의의

-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의 이용이 도움이 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전자거래 당사자들에게 당해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에 대해 상호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임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표 10]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9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한-싱 관련 규정 상응)
DEPA	관련 규정 없음
영-싱 DEA	제8.61조 전자인증 1-4. (한-싱 관련 규정 상응) 5.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자인감, 전자타임스탬프 또는 전자등록 배달서비스에 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한다. 6.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자인증으로 인한 인증자료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한-싱 DPA	제14.8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조치, 또는 나. 전자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금지하게 될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RCEP	제12.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한-싱 관련 규정 상응)
CPTPP	제14.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한-싱 관련 규정 상응)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4) 전자 송장

(i) 전자 송장의 의의 및 효과

- 기존 종이 송장 대신 웹에서 발송 및 수신자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전자 송장 시스템의 이용이 증대하고 있음. 전자 송장을 활용하면 종이 사용량을 절감할 뿐 아니라 배송 시간이 줄어 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종이 송장에 기재된 정보를 다시 전산화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세관 대기 시간도 줄어들고, 문서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줄여주는 등 복잡한 수출입 및 배송 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됨⁴⁴⁾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 송장 규정 현황

[표 1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 송장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p>제10조 전자 송장(Electronic Invoicin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상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전자 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전자 송장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자 영토 내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interoperable)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의 전자 송장에 관한 조치의 이행이 당사자들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지원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자는 자국의 전자 송장 관련 조치를 Peppol과 같은 국제적 체제에 기반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3. 당사자들은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송장 시스템의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 가능한 전자 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하여야 한다. 4. 당사자들은 기업들이 전자 송장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촉진, 권장, 지원 및 원활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전자 송장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구축을 촉진하며, (b) 전자 송장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전자 송장에 관한 역량을 구축한다.
DEPA	제2.5조 전자 송장

44) "종이 송장은 잊어라" 온라인 배송 솔루션 전환 나서, 전자신문, 2014.8.27., p.17.

협정	조문
영-싱 DEA	<p>제8.61-A조 전자 송장</p> <p>---</p> <p>2.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에서 전자 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자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한-싱 DPA	<p>제14.10조 전자 송장</p> <p>---</p> <p>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 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양 당사국의 전자 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p>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	관련 규정 없음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5) 전자지급

(i) 전자지급의 의의 및 배경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지급인)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수취인)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함⁴⁵⁾
-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기술의 발전은 대금결제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면서 전자지급결제(e-Payment)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음. 따라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지급 결제 제도의 활용성 제고가 중요함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지급 규정 현황

[표 1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전자지급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p>제11조 전자지급(Electronic Payments)</p> <p>1.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전자결제 방식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u>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국경 간 전자결제 제도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u></p>

4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2항.

협정	조문
호-싱 DEA	<p>(a) 국제적으로 인정된 전자결제 표준의 채택 및 사용을 촉진</p> <p>(b) 결제 인프라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연결성을 증진</p> <p>(c) 전자결제 서비스에서의 유용한 혁신 및 경쟁을 장려</p> <p>2. 이를 위하여 당사자들은,</p> <p>(a) <u>규제 승인, 면허 요건, 절차 및 기술 표준 등 전자결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u></p> <p>(b) 규제 또는 면허 승인에 관한 결정을 적시에 완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c) <u>전자결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임의로 또는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u></p> <p>(d) <u>금융기관과 서비스공급업체 간 전자 데이터를 교환하여, 전자결제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된 전자결제시스템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 표준 ISO 20022 범용 금융 산업 메시지 체계와 같은 전자결제 메시징에 대한 국제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u></p> <p>(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상호 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결제 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 를 제3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p> <p>(f)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의 채택 등을 통해 적시에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결제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p> <p>3. 제1항에 비추어, 당사자들은 규제를 통한 전자결제시스템의 안전, 효율성, 신뢰 및 보안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u>규제와 정책의 채택 및 집행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는 위험에 비례해야 한다.</u></p>
DEPA	제2.7조 전자지급
영-싱 DEA	제8.54-A조 전자지급
한-싱 DPA	<p>제14.11조</p> <p>1. 전자지급, 특히 비은행, 비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국경 간 전자지급을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p> <p>가. 전자지급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채택 및 사용 강화</p> <p>나.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 운용성 및 상호 연결성 촉진, 그리고</p> <p>다.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 장려</p> <p>---</p> <p>3. 제1항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규제를 통하여 전자지급 시스템에서 안전성, 효율성, 신뢰 및 보안성 유지의 중요성과 규제 및 정책의 채택과 집행은 지급 서비스제공자가 수반하는 위험에 비례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p>

협정	조문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	관련 규정 없음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사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6) 종이 없는 무역

(i) 종이 없는 무역의 의미

- 종이 없는 무역이라 함은 무역에 수반되는 제반 행정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써 수행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오늘날 무역행정 문서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무역 업무 지원 플랫폼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음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종이 없는 무역 규정 현황

[표 1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종이 없는 무역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12조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DEPA	제2.2조 종이 없는 무역
영-싱 DEA	제8.61-B조 종이 없는 무역
한-싱 DPA	<p>제14.12조 종이 없는 무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완성된 전자본(14-3)을 종이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14-4)으로 수용한다. <p>14-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무역행정문서를 말한다.</p> <p>14-4) 이는 양 당사국 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제공되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세계무역기구 무역원활화협정의 의무에 주목하며, 각 당사국은 단일접수 창구를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무역행정문서 및 데이터 요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협정	조문
한-싱 DPA	<p>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는 무역행정문서와 관련된 데이터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단일 창구와의 매끄럽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거나 유지한다.</p> <p>가. 원산지증명서</p> <p>나. 비공개증명서, 그리고</p> <p>다.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그 밖의 문서¹⁴⁻⁵⁾</p> <p>14-5) 양 당사국은 대중에게 이 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 목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p> <p>6.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제5항에 언급된 무역행정 문서에 관련된 데이터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교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7. 각 당사국은</p> <p>가.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된 모든 교환된 데이터를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공개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 및 법적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보호 및 기밀성을 부여한다.</p> <p>나.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담당 관세 당국에만 제공하고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p> <p>다. 공개하는 당사국의 명시적 서면 허가 없이 제5항 및 제6항에 언급된 교환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p> <p>8.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데이터교환시스템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국의 영역 간에 기업의 국경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된 전자 기록의 사용 및 교환을 촉진한다.</p> <p>9. 양 당사국은 제6항과 제8항에 언급된 데이터교환시스템이 가능한 한 서로 호환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데이터교환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의 개발 및 채택을 위하여 노력한다.</p> <p>10. 양 당사국은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게 이 조에 언급된 데이터교환시스템의 사용 및 채택을 증진, 장려, 지원 및 또는 촉진하는 이니셔티브에 협력하고 협업한다.</p> <p>가. 데이터교환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우수 관행의 교환을 포함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 그리고</p> <p>나. 데이터교환시스템의 개발 및 거버넌스에서 시범 사업에 대한 협업</p> <p>11. 양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 및 기업 간 상업적 거래 활동에 사용되는 전자 기록의 수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적으로 그리고 국제포럼에서 협력한다.</p> <p>12. 종이 없는 무역의 이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국제기구가 합의한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협정	조문
RCEP	제12.5조 종이 없는 무역
CPTPP	<p>제14.9조: 종이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p> <p>각 당사자는</p> <p>(a) 일반인이 무역관리 문서(trade administration documents)를 전자적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p> <p>(b)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관리 문서가 종이 문서로 제출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p>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7) 특송 화물

(i) 특송 화물의 의미

- 특송 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는데, 소형의 샘플류,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 등이 여기에 해당함. 특송 화물은 일반 수입품과 별도로 공항·항만에 설치된 특송 업체 자체 검사장 또는 세관 특송 화물 검사장을 거쳐 반입되며, 일반 화물의 통관이 수일 소요되는 데 비해 특송 화물은 4~6시간 안에 통관할 수 있음⁴⁶⁾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송 화물 규정 현황

[표 1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송 화물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제13조 특송 화물(Express Shipments)
DEPA	제2.6조 특송 화물
영-싱 DEA	관련 규정 없음
한-싱 DPA	<p>제14.13조 특송 화물</p> <p>1.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무역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u>항공 특송 화물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자국의 통관 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u></p> <p>2.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u>항공 특송 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u></p>

46)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2020.10.14.

협정	조문
한-싱 DPA	<p>가. <u>특송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고 처리 되도록 규정한다.</u></p> <p>나. <u>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적하목록과 같은 특송 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한다. (*14.6)</u></p> <p>14.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다.</p> <p>다. <u>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반출되도록 규정한다.</u></p> <p>라. <u>통상적인 상황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의 제출로부터 4시간 이내에 특송 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u></p> <p>마. <u>당사국이 상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신고서 및 부가 서류 그리고 관세의 납부를 포함한 공식적인 반입 절차를 반출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모든 중량 또는 가치의 특송 화물에 적용된다.</u></p> <p>3. <u>당사국이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제2항가호부터 마호까지의 대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항공 특송 화물에 대하여 그러한 대우를 제공하는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제공한다.</u></p> <p>4. <u>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u></p> <p>가. <u>그 금액 미만에는 화물의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을 최저과세 기준을 자국의 법에 정한다.</u></p> <p>나. <u>자국의 정해진 가격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u></p> <p>다. <u>물가상승률, 무역원활화에 대한 효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세수 대비 관세 징수의 행정 비용, 국경 간 무역 거래 비용,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관세 징수와 관련된 그 밖의 요소와 같은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자국의 정해진 가격을 적절하게 검토한다.</u></p> <p>5. <u>제4항은 수입허가 또는 유사한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과 같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상품의 화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u></p>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	관련 규정 없음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사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8) 물류

(i) 물류의 의의

-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

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하며,⁴⁷⁾ 이는 디지털 무역을 포함한 모든 무역에 있어 기반 요소라 할 수 있음

- 달리 물류는 국내·외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리적 경제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포장, 조립 등)·정보 활동 등을 의미하기도 함. 최근 물리적 유통의 개념에서 원자재 조달에서 회수까지 포함하는 Logistics와 환경 부하의 저감을 고려하는 Green 물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⁴⁸⁾

(ii)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물류 규정 현황

[표 15]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물류 규정 현황

협정	조문
호-싱 DEA	관련 규정 없음
DEPA	제2.4조 물류
영-싱 DEA	제8.61-C조 물류
한-싱 DPA	<p>제14.9조 물류</p> <p>1. 양 당사국은 비용 감축 및 공급망의 속도와 신뢰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국경 간 물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2.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물류 분야에 관한 우수 관행 및 일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가. 주문형 및 동적 라우팅 솔루션을 포함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p> <p>나. 전기, 원격제어 및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p> <p>다. 페더레이티드 락커 (federated locker)와 같이 상품 배송을 위한 국경 간 선택사항의 이용 가능성 촉진, 그리고</p> <p>라. 물류를 위한 새로운 배송 및 비즈니스 모델</p>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	관련 규정 없음

*조문의 밑줄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작성

47)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48)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49\(2022.10.9 방문\)](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49(2022.10.9 방문)).

3.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 본항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을 의미하는 디지털 서비스무역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의미하는 데이터 무역에 관한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정 현황 및 평가를 제시하고자 함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i)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의의 및 배경

- 먼저 통신인프라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 데이터가 개별 산업별로 보면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임. 또한 오늘날 소비자가 자신의 디지털 단말기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받고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았음
 -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이 중요한 것은 국경 간 이전 대상 데이터(data)에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데이터(가령 영상, 음성, 디지털 게임 등) 즉, 디지털 콘텐츠 이외에도 그러한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가 포함되기 때문임
 - 특히,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사업자에게 있어 데이터라 함은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가리키는데, 당해 사업자 입장에서 해외 이용자의 개인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인정보[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필요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데이터[정보]의 신속하고 원활한 국경 간 이전은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무역에 있어 필수적임.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을 규정하게 되었음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관한 규정 현황

- 싱가포르의 기타결 DEPA 및 호주-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관련 규정을 <표 17>를 통해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두 협정 모두 각 당사자는 이 활동이 대상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자유 원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전송에 관한 자체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고 있음이 주목

- 참고로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이나 USMCA에는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전송에 관한 자체 규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

[표 16]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국경 간 정보 이전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규범 간의 비교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2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p> <p>1.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관해 각 당사국의 독자적인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2.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에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인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p> <p>3. 이 조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이 적절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는,</p> <p>(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p> <p>(b)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정보의 전송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p>
DEPA	<p>제4.3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p> <p>당사국들은 다음 예와 같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과 관련된 자국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p> <p>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2. 각 당사국은 이 활동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한다.</p> <p>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p> <p>(a)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p> <p>(b)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p>
영국-싱 DEA	<p>제8.61-F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p> <p>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p>

협정	조문
영국-싱 DEA	<p>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p> <p>(a)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p> <p>(b)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p>
한-싱 DPA	<p>제14.14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14.7)</p> <p><u>14.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는 제12장 금융서비스에 정의된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공급자인 적용 대상인에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부속서 12 가의 업종과 이 조를 관련시킬 필요가 없음을 양해한다.</u></p> <p>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 전송에 관하여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u>다만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u></p> <p>2.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p> <p>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p> <p>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p> <p>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p>
RCEP	<p>제12.15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p> <p>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p> <p>2. 당사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p> <p>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p> <p>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p> <p>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p>

협정	조문
CPTPP협정	<p>제14.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동에 관해 각자의 독자적인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경 간 이전이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조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b)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정보의 전송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것
USMCA	<p>제19.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느 당사국도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국경 간 이전이 대상 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조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b)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정보의 전송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것5) 5) 데이터 이전이 단지 국경을 넘어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게 불리하게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데이터 이전에 다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는 본 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p>제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적용 대상인의 사업 활동을 위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2. 본 조의 어떤 내용도 일방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1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b)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정보의 전송을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것9) 9) 데이터 이전이 단지 국경을 넘어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인에게 불리하게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데이터 이전에 다른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는 본 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밑줄친 부분은 다른 협정 및 미국 타결 협정 규정과 비교하여 달리 규정된 내용을 가리킴
출처: 필자의 협정 번역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먼저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보장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⁴⁹⁾
 - 이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은 디지털 시대에 있어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한 SNS(Social Network Services)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등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음⁵⁰⁾
- 다음으로 RCEP을 제외한 기타 협정에서는 그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 의무에 대한 적용 예외로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음
 - 다만, 그러한 조치가 (i)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ii)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치는 그 자체가 데이터 무역자유화의 정신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됨
 - 여기서 상기 (i)의 요건은 GATT 20조(일반예외)의 모두 조항(chapeau clause)의 단서를 반영하고, (ii)의 요건은 WTO의 GATS 전문⁵¹⁾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에서의 기술 규정과 표준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의무 사항⁵²⁾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인바, 이는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적용 예외는 인정하되, 이로 인한 무역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관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⁵³⁾이 있는바, 이는 다른 적지 않은 국제무역 규범들에서도 발견되는 한계⁵⁴⁾이기도 함. 더욱이 RCEP 제12.15조3항가호에서는

49) 이와 관련 영-싱 협정에서는 국경 간 정보 전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다른 문언을 사용하나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50) 고준성, 미국이 디지털 무역관련 법정책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20, p.44.

51) WTO GATS 전문에서는 “국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 규정함.

52) WTO TBT협정 2.2조, 5.1.2조 등.

53) 이종석,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의 시사점, 물류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9, p70.

54) 가령, WTO GATS 제6조(국내규제) 1항에서 “---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한 것 등이 그러함.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공공정책 판단을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하여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정당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전송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 주도 USMCA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만을 이유로 다른 당사국의 인[서비스공급자]에게 그 경쟁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달리 대우하는 조치는 협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는 그러한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협정에 비해 다른 당사자의 데이터 국경 간 전송사업자를 보다 보호하는 점에서 더욱 시장 친화적인 규정으로 평가됨⁵⁵⁾
- 셋째,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됨. 이는 당사자가 국경 간 정보 전송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의 정보 주권 또는 데이터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는 국가 본연의 주권적 권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및 개도국들의 입장이기도 함. 이에 비해 미국 참여 USMCA와 미-일 디지털협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음
- 이는 데이터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제하는 국가주권 주장이 사실상 무용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데이터 무역을 주도하는 자국 SNS 다국적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규범을 추진하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함⁵⁶⁾
- 생각건대, 이러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는 일차적으로는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데이터, 소위 ‘빅데이터’가 지닌 자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빅데이터는 ‘축적과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계와 흐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이고, 빅데이터의 가치는 개별 데이터[정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개인의 행위(소비 및 선호도 등) 패턴을 읽는 과정에서 생성되기 때문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 자체의 생산자나 소유자(해당 국가의 개인이나 기관 등)로부터 그러한 데이터 사이의 패턴을 읽는 활용자(주로는 SNS 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로 권력이

55) 고준성, p.44.

56) 데이터 국경 간 이전에 대한 국가주권 논의와 관련하여 EU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전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개인 권리의 보호라는 제3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일종의 시민주권론이라 부르기도 함. 김상배,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n: 이승주 편,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이하 ‘김상배’), 2018, p.17.

이동하기 마련이고, 특히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빅데이터의 경우 그러한 빅데이터의 생산자 및 소유자와 그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국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들 간에 그러한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빅데이터 시대에 그 경쟁력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그것도 자국을 기반으로 생성된 빅데이터를 외국 사업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준다는 우려가 개도국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임⁵⁷⁾

- 그렇다면,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협정에서의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에 대한 당사국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인정 내지 확인 조항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 생각건대 싱가포르 주도 협정이나 미국 주도 협정 모두 동일 조문안에 일정한 조건하에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싱가포르 주도 협정상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관한 당사국의 독자적인 규제 요건 권한 인정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싱가포르 주도 협정상 독자적인 규제 요건 권한에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이외에도 당해 조문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차별적이나 위장된 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그 밖의 추가적인 규제 요건의 부과가 가능할 수 있고, 또한 이를 둘러싼 다툼의 경우 입증 책임에 있어 유리한 근거로 원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미국 주도의 USMCA나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보다 제한하는 규정이라 평가됨
- 덧붙여, 한-싱 협정 제14.14조1항에서는 그러한 당사자 자신만의 규제 요건 인정에 있어 그 요건은 자의적이거나 무역에 대하여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추가 단서를 부가하고 있는바, 전자의 단서는 동조 제3항가호에서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후자의 비례성 원칙은 추가로 규정된 단서여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한편, RCEP 제12.15조제3항나호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필수적 안보 이익의 필요를 당사자가 판단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⁵⁸⁾을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57) 김상배, pp.16-17.

58) 이는 GATT 제21조(안보상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b)호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 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 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에서 유래함.

(2) 컴퓨팅 설비의 위치

(i) 데이터 현지화 조치의 의의 및 규제 배경

- 먼저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라 함은 데이터가 생성된 지역 안에 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행을 가리킴. 가령, 어느 실체가 특정 국가 내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당해 실체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당해 특정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대신에 그 데이터를 당해 특정 국가 내에 관리해야 함을 의미함.⁵⁹⁾ 또한 “현지화 조치(localization measures)”라 함은 기업이 어느 국가의 국경 내에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하여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로 정의됨⁶⁰⁾
 - 이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데이터의 국경을 넘는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반 조치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i) 현지에서의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는 요건(local processing requirement)이나 (ii) 현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는 요건(local storage requirement)⁶¹⁾이 대표적인데⁶²⁾ 이러한 조치는 어느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설비를 자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소위 “컴퓨팅 설비의 위치”(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시행됨
- 이러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규제나 정책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추가로 상당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관계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특히,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cloud services)⁶³⁾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는 중대한 장벽으로 작용함⁶⁴⁾
- 실제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디지털 무역을 저해하는 최대 장벽으로

59) What is data localization?, <https://www.cloudflare.com/ko-kr/learning/privacy/what-is-data-localization/>(2022.10.1 방문).

60)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1, Publication No: 4415, Investigation No: 332-531, July 2013, p.16.

61) 여기에는 컴퓨팅 설비를 현지에 설치하도록 하는 요구하거나 특정 관할 구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해당됨.

62) M.F. Ferracane, H. Lee-Makiyama & E. van der Martel,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ECIPE & DTE(이하 ‘Ferracane etc.’), p.56.

63) 클라우드 서비스는 크게 3종류(인프라/플랫폼/소프트웨어)가 있는바 (i)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는 저장소나 네트워크 CPU 등 컴퓨팅 자원을 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며, 일반적인 호스팅 서비스(예: 아마존 웹서비스 등)가 이에 해당되고, (ii)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플랫폼인 서버나 OS 등의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리키고, (iii)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는 문서작성 및 편집 등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예: 구글독스, 프레지 등)가 이에 해당됨. 클라우드 서비스란?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1_hanafax&logNo=9018919440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2020.6.16. 접속).

64) CRS 2019 Report, p.14.

지적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2010년 이후 동 조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⁶⁵⁾ 또한 120개가 넘는 국가들이 개인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동 법에서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⁶⁶⁾

- 한편, 데이터 현지화 조치를 도입하는 정부들은 그러한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나 국가 안보 등을 주장하고 실제 일부 현지화 정책이 합법적인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일부는 외국 기업들을 희생시키면서 국내 산업, 서비스공급자 또는 지적재산을 보호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촉진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어서 이는 시장접근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작동하게 됨⁶⁷⁾
-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무역과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위해 국가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게 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 현황

[표 1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24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당사자들은 컴퓨팅 설비의 이용에 관해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비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고유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p> <p>2. 어떠한 당사자도 대상인이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설비를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p> <p>3. 이 조의 어떤 내용도 한쪽 당사자가 적절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는,</p> <p>(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p> <p>(b)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컴퓨팅 설비의 이용이나 위치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p> <p>4. 이 조는 제9장(금융서비스)의 제1조(e) 및 (h)(정의)에서 각각 정의한 "금융기관" 또는 "한쪽 당사자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65) Ferracane etc.', p.55, Figure 3.6: Cumulative Number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1961-2016); 고준성, p.42에서 재인용.

66) C&M International, "Benefits of the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October 2018; 고준성, p.42에서 재인용.

67) CRS 2019 Report, pp.13-14; 고준성, p.42에서 재인용.

협정	조문
DEPA	<p>제4.4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당사자들은 다음의 예와 같이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자국의 약속 수준을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인에게 그 영토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b)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영국-싱 DEA	<p>제8.61-G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토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인에게 그 영토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b)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한-싱 DPA	<p>제14.15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인에게 그 영역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협정	조문
한-싱 DPA	<p>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p> <p>나.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컴퓨팅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p> <p>4. 이 조는 제12.15조에 정의된 대로, “금융기관” 또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p>
RCEP	<p>제12.14조 컴퓨터 설비의 위치</p> <p>1.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터 설비의 사용 또는 위치에 관한 자신만의 조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p> <p>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적용 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p> <p>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p> <p>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p> <p>나.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p>
CPTPP협정	<p>제14.13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양 당사자는 컴퓨팅 설비의 이용에 관해 각 당사자가 각기 독자적인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또한 이러한 요건에 통신의 보안 및 비밀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어떠한 당사자도 적용 대상인이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컴퓨팅 설비를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도록 요구할 수 없다.</p> <p>3. 본 조의 어떤 내용도 한쪽 당사자가 적절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2항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p> <p>(a) 무역을 자의적으로나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또는 위장된 규제(disguised regulation)를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그리고</p> <p>(b)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준을 넘어 컴퓨팅 설비의 이용이나 위치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을 것</p>

협정	조문
USMCA	<p>제19.12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어느 당사국도 적용 대상인이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p>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p>제12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어느 일방 당사국도 적용 대상인이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p> <p>2. 본 조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u>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u></p>

*밑줄친 부분은 다른 협정 및 미국 타결 협정 규정과 비교하여 달리 규정된 내용을 가리킴
출처: 필자의 협정 번역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먼저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적용 대상인에게 당해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당사자 영역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두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지에서의 데이터 처리 요건 및 데이터 저장 요건등이 부과될 경우 해외의 고객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로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요건 부과 금지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과 더불어 실질적 의미에서의 디지털 국제 규범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RCEP을 제외한 기타 협정에서는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요건 부과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로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음. 다만, 그러한 조치가 (i)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수단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 그리고 (ii)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정보 이전에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치는 그 자체가 데이터 무역자유화의 정신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됨. 이들 요건은 GATT 20조(일반예외)의 모두 조항(chapeau clause) 단서 및 WTO의 GATS 전문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조항을 반영하여 규정된 것임

- 이와 관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것의 문제점은 앞서도 언급하였고, 특히 RCEP 제12.14조제3항가호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단을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하여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 셋째,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됨. 이는 당사자가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의 통신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통신 설비에 대한 규제는 국가 본연의 주권적 권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됨
- 넷째, RCEP 제12.14조제3항나호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필수적 안보 이익의 필요를 당사자가 판단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⁶⁸⁾을 수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 싱가포르의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와 달리 USMCA와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당사자의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 요건 부과 인정 조항이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 조치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크게 대비됨. 이는 미국 참여 협정에서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미국의 데이터 기반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임

(3)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i) 금융 데이터 현지화 조치의 의의 및 규제 배경

- 오늘날 금융기관은 방대한 자사 고객의 금융거래 및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데이터 센터를 두어 이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서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그러한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거나 두도록 할 경우 이는 설치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 점에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금융기관들을 보유한 미국으로서는 금융시장 개방 협상 시 그러한

68) 이는 GATT 제21조(안보상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b)호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 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 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에서 유래함.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구 제한이 중요한 협상 목표가 되어 왔음.⁶⁹⁾ 다만, 금융서비스의 경우 금융규제 당국에 의한 규제 또는 감독을 위해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에의 접근 보장이 요구된다는 것에는 미국도 이견이 없음. 이러한 배경에서 주로는 미국 주도 USMCA 및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에서 금융규제 당국의 접근 보장을 전제로 타방 당사국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 영토 내에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 현황

[표 1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25조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이 조의 목적상, 한쪽 당사자(“관련 당사자”)에게 “대상 금융인”은 다음을 의미한다.</p> <p>(a) 제9장(금융서비스) 제1조 (e)(정의)에 정의된 “금융기관”으로서, 각 당사자의 인에 의해 통제되는 관련 당사자의 영토에 위치하는 지점을 포함한다.</p> <p>(b) 제9장 (금융서비스) 제1조 (b)(정의)에 정의된 “한쪽 당사자의 국가 간 금융 서비스공급자”로서, 관련 당사자의 금융규제기관에 의한 규제, 감독,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된다.</p> <p>2. <u>한쪽 당사자의 금융규제당국이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으로, 대상 금융인이 그 당사자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밖에 둔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한, 어떠한 당사자도 대상 금융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컴퓨팅 설비를 그 당사자의 영토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u></p> <p>3. 각 당사자는 대상인에게 그 당사자의 영토 또는 비당사자의 영토 내에 있는 컴퓨팅 설비를 이용하거나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u>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대상 금융인에게 제2항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u></p>
DEPA	관련 규정 없음
영국-싱 DEA	관련 규정 없음
한-싱 DPA	<p>제14.15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관련 당사국”)에게 “적용 대상 금융인” 이란 다음을 말한다.</p>

69) 고준성, p.49.

협정	조문
한-싱 DPA	<p>가. 제12.15조에 정의된 대로, 어느 한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고 관련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지점 포함 금융기관, 또는</p> <p>나. 제12.15조에 정의된 대로, 관련 당사국 금융규제당국의 규제, 감독, 인가, 승인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p> <p>2. 양 당사국은 적용 대상 금융인의 거래 및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그러한 적용 대상 금융인의 정보에 <u>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융규제 및 감독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접근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u></p> <p>3. 양 당사국은 적용 대상 금융인의 국경 간 데이터 집계, 저장, 처리 및 전송 능력이 양당사국의 금융 분야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용 대상 금융인의 포괄적인 국경 간 데이터 및 기술 사용 능력이 위험관리 역량 증진, 효율성 및 운영 효과성 증대, 혁신을 지원하는 통찰력, 향상된 소비자 복지 및 그 밖의 것을 포함한 일련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p> <p>4.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p> <p>가. <u>적용 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영역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를 지정할 필요 없이, 적용 대상 금융인이 당사국 영역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위치를 지정한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당사국의 금융규제 당국에 허용할 수 있는 정책 및 규칙의 개발, 채택 및 이행과 관련된 경험과 견해를 공유한다.</u></p> <p>나. <u>적용 대상 금융인이 당사국의 영역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위치를 지정한 컴퓨팅 설비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규제 또는 감독의 목적상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보유하는 한, 적용 대상 금융인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하는 대로 그 당사국의 영역 외부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장려한다.</u></p>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협정	관련 규정 없음
USMCA	<p>제17장 금융서비스</p> <p>제17.18조: 컴퓨팅 설비의 위치</p> <p>1. 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적용 대상인의 거래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u>당해 적용 대상인의 정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융규제 및 감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또한 그런 접근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u></p>

협정	조문
USMCA	<p>2. <u>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적용 대상인이 그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그 시설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 규제 및 감독 목적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어느 당사국도 그 적용 대상인에게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u></p> <p>3. <u>각 당사국은 적용 대상인에게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 또는 다른 관할권의 영토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거나 동 시설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그 적용 대상인에게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 접근성의 부족을 개선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0)</u></p> <p>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 접근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 당사국은 적용 대상인에게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또는 그 당사국이 그러한 접속을 가지는 다른 관할권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p> <p>4. <u>본 조의 어떤 규정도, 개인 데이터,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기록과 계정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본 조상의 약속이나 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이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u></p>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	<p>제13조: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의 위치</p> <p>1. <u>양 당사국은 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의 거래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당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의 정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융규제 및 감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또한 그런 접근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u></p> <p>2. <u>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가 그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그 시설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 규제 및 감독 목적으로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어느 일방 당사국도 그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u></p> <p>3. <u>각 당사국은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그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 접근성의 부족을 개선할 합리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11)</u></p> <p>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방 당사국의 금융규제당국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 접근성을 가지지 못할 때에는, 그 당사국은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을 그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p>

*밑줄친 부분은 다른 협정 및 미국 타결 협정 규정과 비교하여 달리 규정된 내용을 가리킴
출처: 필자의 협정 번역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먼저 국가의 금융규제당국은 적용 대상인이 그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그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그 시설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해 규제 및 감독 목적으로 그러한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를 자국 영토 내에서 이용하거나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도입한 USMCA 및 미-일 디지털협정에서도 금융규제당국이 적용 대상인의 거래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용 대상인의 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금융규제 및 감독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그러한 접근에 대한 잠재적 제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서 뒷받침됨.⁷⁰⁾ 이러한 배경에서 DEPA, 영-싱과 RCEP 및 CPTPP 협정안에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이들 협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제 권한을 가짐
- 다만,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싱가포르로서는 호주-싱가포르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하면서 금융규제 당국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의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목적에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 보장을 전제로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영토 내에서의 이용이나 영토 내에 둘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지 못한다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미국 주도 USMCA와 미-일 디지털협정의 관련 조문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한-싱 디지털협정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 및 감독 목적에서의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에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한다는 규정 대신에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무조항 대신에 이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장려한다는 노력조항으로만 규정하여 규범력을 결하고 있음

(4) 공공 부문 데이터 접근

(i) 공공 부문 데이터 접근의 의의 및 배경

- 데이터 무역의 대상인 데이터 가운데 공공 부문 데이터는 최대 데이터 소스라는 점에서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그러한 공공 부문 데이터에의 접근 허용은 데이터 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음

70) USMCA 제17.18조1항 및 미-일 디지털협정 제13조1항.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공개된 정부 데이터 조항을 통해 당사국의 정부 정보가 일반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정부 데이터가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검색, 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개방된 정부 정보에 관한 규정 현황

**[표 1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개방된 정부 정보 규정 현황
및 미국 타결 디지털 무역 규범 간의 비교**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27조 개방된 정부 데이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정부 정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u>보유하는 데이터를 포함한 비독점적 정보를 말한다.</u> 2. 당사자들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과 이용을 원활화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3. 한쪽 당사자가 정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선택한 경우, 그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u>정보가 적절히 익명화되고, 기술적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며, 탐색, 검색,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하고 개방된 형식이어야 한다.</u> (b) <u>실행 가능할 때,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s)로 공간적으로 활성화된 형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u> 4. 당사자들은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EPA	<p>제9.5조 공개된 정부 데이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을 원활화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증진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자가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한, 당해 당사자는 정보가 공개된 데이터로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3. 당사자들은 사업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데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이 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u>무엇보다도 기술 이전, 인재 형성 및 혁신을 원활화하기 위해 공개된 데이터 세트, 특히 글로벌 가치를 지닌 데이터 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공동으로 확인</u>

협정	조문
DEPA	<p>(b) 공개된 데이터 세트에 기초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장려, 그리고</p> <p>(c)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공 라이선스 형태로 공개된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여, 현지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형식에 의존하여 누구나 공개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 사용, 수정 및 공유</p>
영국-싱 DEA	<p>제8.61-H조 공개된 정부 정보</p> <p>1. 양 당사자는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경쟁력 및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p> <p>2. 당사자는 정부 정보가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한도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a) 그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화되고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p> <p>(b)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p> <p>3. 양 당사자는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특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각 당사자가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p>
한-싱 DPA	<p>4.26조 공개된 정부 데이터</p> <p>1. 양 당사국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p> <p>2. 당사국은 정부 정보가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선택하는 한도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p> <p>가. 그 정보는 적절하게 식별화되고 기술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으로 검색, 불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분배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p> <p>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정보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이 용이하며 무료로 이용 가능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공간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갱신된다.</p> <p>3. 양 당사국은 사업 및 연구 기회를 증진하고 창출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p>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협정	관련 규정 없음

협정	조문
USMCA	<p>제19.18조: 개방형 정부 데이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국은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및 혁신을 육성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u>일방 당사국이 정부 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한 범위 내에서 당해 정부는 동 정부 정보가 기계로 인식되고(machine-readable) 공개되며 검색, 이용, 재이용 및 재배포도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 3. 양 당사국은 <u>특히 중소기업을 위한</u>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정부 정보의 이용과 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p>제20조: 개방형 정부 데이터 (USMCA 제19.18조와 동일)</p>

*밑줄친 부분은 다른 협정 및 미국 타결 협정 규정과 비교하여 달리 규정된 내용을 가리킴
출처: 필자의 협정 번역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먼저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공개된 정부 정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당사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정부 정보의 경우 검색 및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이어야 할 것과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이용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공개된 정부 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규정이 노력조항인 관계로 실제 정부 정보의 공개 성과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싱가포르 주도 협정에서는 공개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그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관련 DEPA에서는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공 라이선스 형태로 공개된 데이터 라이선스 모델의 사용 및 개발 촉진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열거하고 있음

4.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1) 온라인 안전 및 보호

(i) 온라인 안전 및 보호의 의의 및 배경

-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관계로 온라인의 안전 및 보안,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스팸 메일への 대응 및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무역에 따른 다양한 보호 및 보안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그러한 디지털 무역의 보호 및 보안 문제への 대응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게 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 현황

[표 20]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 현황

협정	조문
싱-호주 DEA	관련 규정 없음
DEPA	<p>제5.2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문제への 공동의 해결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당사자들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a multi-stakeholder approach)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영국-싱 DEA	<p>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자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양 당사자는 국제포럼을 포함하여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u>글로벌 문제への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u> 4. 양 당사자는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면서, <u>각자의 법령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u>
한-싱 DPA	<p>제14.23조 온라인 안전 및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협정	조문
한-싱 DPA	2.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을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u>공동의 해결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u>
RCEP	관련 규정 없음
CPTPP협정	관련 규정 없음

* 밑줄 친 부분은 다른 협정과 비교하여 달리 규정된 내용을 가리킴
출처: 필자의 협정 번역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먼저 상-호주 협정을 제외한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동 조항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환경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디지털 무역에 따른 온라인 안전 및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a multi-stakeholder approach)이 중요함을 인정한다는 온라인 안전 및 보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함
- 영-싱 및 한-싱 협정에서는 온라인 안전 및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영-싱 협정에서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규정함
- 이에 비해 싱가포르 주도의 최초 디지털 무역협정인 상-호 협정과 RCEP 및 CPTPP 협정에서는 이에 관해 달리 규정이 없음
- 상술한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은 구속력 없는 노력조항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한 것도 아니어서 선언적 효과를 가질 뿐 달리 실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2) 온라인 소비자 보호

(i)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의의 및 배경

-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암묵적인 사실의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실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나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후 제품을 전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인터넷 또는 기타 계정에 청구하거나 이로부터 인출하는 행위 등이 그러함

- 따라서 소비자가 직면할 수 있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이나 불공정한 계약 조건 및 부당행위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이 점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기도 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 현황

[표 21]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온라인 안전 및 보호 규정 현황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15조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 불공정 계약 조건 및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 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활동은 오인하거나 기만적이어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주거나 예방하지 못하면 그러한 피해를 초래하는 잠재적 위협을 주는 상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암묵적인 사실의 허위 표시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실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 (b)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후 제품을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또는 (c)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인터넷 또는 기타 계정에 청구하거나 이로부터 인출하는 행위 3. 각 당사자는 온라인 상업활동에 관여된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4. 당사자들은 소비자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활동을 관할하는 각 당사자의 국가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5.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각자 자국의 법령에 따라 허위의 기만적인 상업활동과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해야 하며, 여기에는 온라인 상업활동에 관한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6.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적인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유익함을 인정한다.

협정	조문
DEPA	<p>제6.3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들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 오인 또는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자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3. 각 당사자는 <u>온라인 상업적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 오도 또는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률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 이러한 법률에는 일반 계약 또는 과실 법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성격상 민사 또는 형사법일 수 있다. “사기, 오도 또는 기만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품질, 가격, 용도 적합성, 수량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 또는 허위 주장을 하는 행위, 또는 (b) 공급할 의도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광고하는 행위, 또는 (c)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한 후 상품을 전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또는 (d)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계정, 전화계정 또는 기타 계정에 청구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4. 각 당사자는 다음 내용의 법률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인도 시에, <u>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가 그것의 품질에 관한 공급자의 주장과 일치하여 수용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품질일 것을 요구한다.</u> (b) <u>소비자가 품질에 만족하지 않으면,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u> 5. 각 당사자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법 및 규정을 공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의 소비자를 포함하여, 소비자 구제 메커니즘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7. 당사자들은 적절하고 각 당사자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온라인 상업활동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을 포함하여 오도 및 기만행위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한 협력을 촉진한다. 8. 당사자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클레임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적 분쟁 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이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
영국-싱 DEA	<p>제8.61-M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자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 신뢰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협정	조문
영국-싱 DEA	<p>2. 이를 위하여, 각 당사자는 소비자에게 위해 또는 잠재적 위해를 가하는 오인, 기만, 사기 및 불공정 상관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포함하여, 디지털 거래에 종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p> <p>3. 양 당사자는 소비자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각자의 국가 소비자 보호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경우, 이를 촉진해야 한다.</p> <p>4. 양 당사자는 또한 타방 당사자의 공급자와 거래하는 한쪽 당사자의 소비자를 포함하여, 디지털 거래에 종사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p> <p>5. 양 당사자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대안적인 분쟁해결을 포함한 메커니즘의 이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한-싱 DPA	<p>제14.21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p> <p>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 불공정한 계약 조건과 부당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p> <p>2. 이 조의 목적상,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은 사기적 또는 기만적이며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를 초래하거나,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피해의 잠재적 위험을 제기하는 상업적 관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p> <p>가. 사실에 대한 묵시적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오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p> <p>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청구된 후 그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달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또는</p> <p>다. 승인 없이 소비자의 금융 계정, 디지털 계정 또는 그 밖의 계정에 청구하거나 인출하는 행위</p> <p>3. 각 당사국은 <u>온라인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p>
RCEP	<p>제12.7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p> <p>1. 당사자들은 소비자 신뢰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 밖의 조치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p> <p>2.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u>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p>

협정	조문
RCEP	<p>3. 당사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p> <p>4.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p> <p>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p> <p>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p>
CPTPP 협정	<p>제14.7조: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p> <p>1. 양 당사자는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관여할 때 제16.6.2조(소비자 보호)에 언급된 바와 같은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각 당사자는 온라인 상거래 활동에 관여된 소비자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피해를 야기할 사기적이거나 기만적인 상거래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p> <p>3. 양 당사자는 소비자 복지 향상을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활동을 관할하는 각 당사자의 국가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양 당사자는 제16.6.5조 및 제16.6.6조(소비자 보호)에 따라 모색할 협력에 온라인 상거래 활동에 관한 협력이 포함된다는 점에 동의한다.</p>

*밑줄 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조문을 의무조항과 노력조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의무조항의 경우 (i) 협정에서는 공통적으로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ii) DEPA에서는 동 법규 안에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가 수용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품질일 것과 소비자가 품질에 불만족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도록 요구함.⁷¹⁾ 그리고 (iii) DEPA에서는 당사자가 자국의 소비자 보호 법규를 공개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⁷²⁾고 요구하고, (iv) RCEP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71) DEPA 제6.3조4항.

72) DEPA 제6.3조5항.

- 다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조항의 경우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온라인 상업활동에 관한 소비자 보호법의 집행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⁷³⁾을 규정하거나 온라인 소비자 복지 향상을 위해 당사자들의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들 간에 협력할 것 또는 디지털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모색할 것 등에 대해 규정함

(3) 개인정보의 보호

(i) 개인정보 보호의 의의 및 배경

- 개인이 전자상거래이든 그밖의 디지털 서비스이든지 간에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 정보는 물론 당해 디지털 거래 및 서비스 이용 내역 등 당해 개인에 관한 정보가 서비스공급자인 사업자에게 이전되거나 노출되기 마련임
- 따라서 국가는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체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당사자들 간에 그러한 개인정보 보호 체제 수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게 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현황

[표 22]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개인정보 규정 현황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17조 개인정보의 보호</p> <p>1. 당사자들은 전자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이를 위해, 각 당사자는 전자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체제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체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시스템 및 OECD 프라이버시 보호 및 국경을 초월하는 개인 데이터 흐름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p> <p>3. 이를 위해, 각 당사자가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는 수집 제한, 데이터 품질, 목적의 명시, 사용 제한, 보안 유지, 투명성, 개인의 참여 및 책임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p>

73) 호-싱 제15조5항.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4. 각 당사자는 전자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개인을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부터 보호함에 있어 비차별 관행(non-discriminatory practices)을 채택해야 한다.</p> <p>5. 각 당사자는 전자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포해야 한다. 이런 정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p> <p>(a) 자연인이 어떻게 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지</p> <p>(b) 기업이 어떻게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p> <p>6.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 내의 기업이 인터넷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등을 공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p> <p>7.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이러한 서로 다른 체제 간의 호환성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자율적으로 합의하던 상호 합의하던 또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에 의해서든, 규제 성과의 인정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서 적용되는 모든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들 사이의 호환성을 촉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p> <p>8. 당사자들은 CBPR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p> <p>9. 당사자들은 산업 등의 CBPR 시스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CBPR 시스템을 공동으로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DEPA	<p>제4.2조 개인정보 보호</p> <p>1. 당사자들은 디지털 경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함과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 그러한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2. 이를 위해,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적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p> <p>3. 당사자들은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뒷받침하는 원칙이 다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p> <p>(a) 수집 제한</p> <p>(b) 데이터 품질</p> <p>(c) 목적 명기</p> <p>(d) 사용 제한</p> <p>(e) 보안 장치</p> <p>(f) 투명성</p> <p>(g) 개인의 참여, 그리고</p> <p>(h) 책임</p>

협정	조문
DEPA	<p>4. 각 당사자는 자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차별 관행을 채택한다.</p> <p>5.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 공표한다.</p> <p>(a) 개인이 구제를 추구하는 방법, 그리고</p> <p>(b)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p> <p>6.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 하면서,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그들의 서로 다른 제도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을 추구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p> <p>(a)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로 부여되는지와 관계없이 규제 결과의 인정</p> <p>(b) 더 광범위한 국제적 체제</p> <p>(c) 실행 가능한 경우, 그들 각자의 법적 체계의 국가인증마크 또는 인증 체계가 제공하는 동등한 보호의 적절한 인정, 또는</p> <p>(d) 당사자 간의 기타 개인정보 전송 방법</p> <p>7. 당사자는 제6항의 메커니즘이 그들 각자의 관할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그들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한 또는 기타 적절한 합의를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p> <p>8. 당사자들은 개인 데이터 보호 표준 및 우수 관행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인증 마크의 채택을 장려한다.</p> <p>9. 당사자들은 데이터 보호 인증 마크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p> <p>10. 당사자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원활화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데이터 보호 인증 마크를 상호 인정하도록 노력 한다.</p>
영국-싱 DEA	<p>제8.61-E조 개인정보의 보호</p> <p>1. 양 당사자는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디지털 무역에 관여하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이것이 디지털 경제와 무역 발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이를 위해, 각 당사자는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디지털 거래에 관여하는 자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적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과 지침을 고려한다.</p> <p>3. 양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을 고려한 자국의 법적 체계의 핵심 원칙에는 수집 제한, 데이터 품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및 책임이 포함된다는 데 동의한다.</p>

협정	조문
영국-싱 DEA	<p>4.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 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거래에 관여하는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차별 관행을 채택한다.</p> <p>5. 각 당사자는 전자거래를 포함하여 디지털 거래에 관여하는 자연인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다음을 포함하여 공표한다.</p> <p>(a) 자연인이 구제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p> <p>(b) 법인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방법</p> <p>6. 양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자는 이러한 상이한 체제 간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과 채택을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상호 협정 또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포함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계약 규정을 포함하여 각자의 영토 간에 개인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기존 메커니즘이 있음을 인정한다.</p> <p>7. 양 당사자는 각자의 영토 내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약정 또는 기타 적절한 약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한다.</p>
한-싱 DPA	<p>제14.17조 개인정보의 보호</p> <p>1. 양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경제 및 무역 발전에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함을 인정한다.</p> <p>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국의 법적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한다.14-8)</p> <p>14-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개인정보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데이터 보호 또는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에 의한 자발적 약속의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p> <p>3. 제2항에 언급된 원칙은 사생활 보호 및 개인신상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수집 제한, 정보의 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그리고 책임을 포함한다.</p> <p>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을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한다.</p> <p>5.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p>

협정	조문
한-싱 DPA	<p><u>가. 자연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u> <u>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u></p> <p>6. 양 당사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상이한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이러한 상이한 접근 간의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개발을 장려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한다.</p> <p><u>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적·지역적 틀</u> <u>나. 각 당사국의 법적 체계, 국가 신뢰마크 또는 인증 체계가 부여하는 비교 가능한 보호에 대한 상호 인식, 또는</u> <u>다. 양 당사국 간 개인정보 전송에 대한 그 밖의 방법</u></p> <p>7.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제6항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방식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메커니즘 간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러한 약정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약정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p> <p>8.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 및 또는 APEC 개인정보 수탁자 인증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촉진하는 유효한 메커니즘임을 인정한다.14-9)</p> <p>14-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대체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p> <p>9. 양 당사국은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 시스템과 같이, 공통의 국경 간 정보 전송 메커니즘의 채택을 공동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p>
RCEP	<p>제12.8조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p> <p>1.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적 틀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p> <p>2.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각 당사자의 법적 틀의 발전에서, 그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국제 표준, 원칙, 지침 그리고 기준을 고려한다.</p> <p>3. 각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신이 전자상거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shall).</p> <p><u>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u> <u>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u></p> <p>4. 당사자들은 법인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그들의 정책 및 절차를 인터넷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장려한다.</p> <p>5. 당사자들은 당사자로부터 이전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한도에서 협력한다.</p>

협정	조문
CPTPP협정	<p>제14.8조: 개인정보의 보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 체제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체제의 개발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관련 국제기구들의 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를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보호함에 있어 비차별 관행(non-discriminatory practices)을 채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각 당사자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국이 제공하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should). 이런 정보는 다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자연인이 어떻게 권리구제를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b) 기업이 어떻게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 5. 양 당사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접근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각 당사자는 서로 다른 체제 간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을 증진시키는 메카니즘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메카니즘들은 규제 성과에 대한 인정(그 인정이 자발적인 것이든 상호 약정(mutual arrangement)에 한 것이든 또는 보다 넓은 국제적 틀에 의한 것이든 관계가 없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는 자국에서 적용되는 메카니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나아가서 이런 메카니즘이나 또는 양 당사자 간의 양립 가능성 증진을 위해 기타 적합한 약정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밑줄 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조문을 의무조항과 노력조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의무조항의 경우 (i) 검토 대상 6건의 협정 모두에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사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와 관련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개발함에 있어 관련 국제기구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연성적으로 규정하고,⁷⁴⁾ 그러한 원칙에는 수집 제한, 정보의 질, 목적 명기, 사용 제한, 보안 장치, 투명성, 개인의 참여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ii)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상-호, DEPA, 영-싱, 한-싱)과 RCEP에서는 각 당사국은

74) 가령, 상-호협정에서는 APEC 국가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시스템과 「사생활 보호 및 개인신상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을 언급하고, 한-싱협정에서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신상정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언급함.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여기에는 자연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야 함. 이에 비해 CPTPP에서는 정보를 공표한다(should)고 연성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목됨. (iii)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부터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을 보호할 때 비차별적 관행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에 비해 CPTPP에서는 이를 노력조항으로 규정하고 RCEP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음

- 다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조항의 경우 싱가포르 기타결 협정 모두에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전자적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정에 따라 자국 영토 내의 기업이 인터넷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 등을 공표하도록 권장하거나⁷⁵⁾ 당사국들 간의 서로 다른 제도 간의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개발을 추구하도록 하고,⁷⁶⁾ 개인 데이터 보호 표준 및 우수 관행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의 데이터 보호 인증 마크의 채택을 장려하거나⁷⁷⁾ 공통의 국경 간 정보 전송 메커니즘의 채택을 공동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⁷⁸⁾ 등을 규정함

(4)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i)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의의 및 배경

- 흔히 스팸 메일로 알려진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는 홍보 목적의 이메일 및 SMS를 가리키며 수신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팸 메일로 인하여 엄청난 양의 패킷이 낭비되는 불편에 직면하게 됨⁷⁹⁾
- 따라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스팸 메일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그러한 스팸 메일 공급자에 대한 청구 수단 제공 등을 강구하게 됨

75) 호-싱 제17조6항.

76) DEPA 제4.2조6항.

77) DEPA 제4.2조8항.

78) 한-싱 제14.7조9항.

79) <https://namu.wiki/w/%EC%8A%A4%ED%8C%B8%EB%A9%94%EC%9D%BC>.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 현황

[표 23]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 현황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1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p> <p>1. 각 당사자는 전자메일 주소에 보내진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u></p> <p>(a)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수신자가 그런 메시지의 계속적 전송을 금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의 발신자에게 요구하는 조치, 또는</u></p> <p>(b) <u>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전자 메시지의 수신에 대해 수신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u></p> <p>2. 각 당사자는 소비자가 전자우편 주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발송되는 <u>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줄이거나 방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메시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u></p> <p>3. 각 당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u>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발신자에 대해 청구 수단(recourse)을 제공해야 한다.</u></p> <p>4. 당사자들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u></p>
DEPA	<p>제6.2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p> <p>1. 각 당사자는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p> <p>(a)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공급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u></p> <p>(b) <u>각 당사자의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u></p> <p>(c)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u></p> <p>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공급자에 대하여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u></p> <p>3. 당사자들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한다.</u></p>
영국-싱 DEA	<p>제8.61-N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p> <p>1. 각 당사자는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u></p>

협정	조문
영국-싱 DEA	<p>(a)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인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또는</u></p> <p>(b) <u>그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수신에 대해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u></p> <p>2. 각 당사자는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메시지가 누구를 대신하여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고, 당사자의 법령에 제공된 범위 내에서 최종사용자가 언제든지 무상으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u></p> <p>3. 각 당사자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미준수한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u></p> <p>4. 양 당사자는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u></p>
한-싱 DPA	<p>14.20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p> <p>1.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p> <p>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인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u></p> <p>나. <u>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u></p> <p>다.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u></p> <p>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미준수한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u></p> <p>3. 양 당사국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p>
RCEP	<p>제12.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p> <p>1. 각 당사자는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u></p> <p>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수신을 중지할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u></p> <p>나. <u>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u></p> <p>다.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u></p> <p>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되는 자신의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u></p> <p>3. 당사자들은 <u>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u></p>

협정	조문
CPTPP협정	<p>제14.14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⁸⁰⁾</p> <p>1. 각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p> <p>(a)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의 수신자가 그러한 메시지의 계속적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한 메시지의 발신자에게 요구하는 조치</p> <p>(b)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전자적 메시지의 수신에 대해 수신인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조치</p> <p>(c)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조치</p> <p>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발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수단(recourse)을 제공해야 한다.</p> <p>3. 양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와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밑줄 친 부분은 의무조항을 가리킴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동 규정상 조문을 의무조항과 노력조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의무조항의 경우 (i)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그러한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것을 요구함. 덧붙여 DEPA, 한-싱, RCEP 및 CPTPP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조치도 추가로 요구함. 또한 (ii) 각 당사자는 이행해야 되는 자신의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 청구 수단을 제공할 것도 규정함. 이밖에 영-싱 협정에서는 각 당사자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해당 메시지가 누구를 대신하여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공개할 것도 요구함
- 다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노력조항의 경우 싱가포르 기타결 협정 모두에서 당사자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하고, 상-호주 협정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적 메시지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¹⁾

80)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한 자국의 법 체제를 구축하기 전에는 본 조를 적용할 의무가 없다.

81) 상-호주 협정 제19조2항.

(5) 사이버 보안 협력

(i) 사이버 보안의 의의 및 배경

-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이라 함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데이터를 악의적인 전자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가리킴. 디지털 무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이뤄지는 관계로 디지털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악의적인 전자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 긴요한 과제임
- 이 점에서 디지털 무역협정 당사국들은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당사국 간에 협력 메카니즘의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게 됨

(ii)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협력 규정 현황

[표 24]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경제협정에서의 사이버 보안 협력 규정 현황

협정	조문
상-호주 DEA	<p>제34조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p> <p>1. 당사자들은 글로벌 번영을 위해 디지털 무역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당사자들은 또한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a)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역량 구축</p> <p>(b) 당사자들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악의적 침투 또는 악성 코드의 배포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존 협업 메카니즘의 활용</p> <p>(c) 자격요건, 다양성 및 평등성의 상호 인정에 관한 가능한 계획을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력 개발</p>
DEPA	<p>제5.1조 사이버 보안 협력</p> <p>1. 당사자들은 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당사자들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a)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p> <p>(b) 당사자들의 전자적 망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 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p> <p>(c) 자격, 다양성 및 평등에 대한 상호 인정과 관련된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p>

협정	조문
영국-싱 DEA	<p>제8.61-L조 사이버 보안</p> <p>1. 양 당사자는 글로벌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a) 사이버 보안 위협의 진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각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p> <p>(b) 전자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인 침입 또는 악성 코드의 유포를 예측, 식별 및 완화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사이버 보안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존 협업 메커니즘의 확립 및 강화</p> <p>(c) 인식 및 우수 관행을 위한 정보 및 경험의 공유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안에 관한 대화의 유지</p> <p>(d) 전반적인 사이버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내 사이버 공간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사물인터넷 기기의 기본 보안 표준에 대한 상호 인정의 확립</p> <p>(e) 훈련 및 개발과 관련된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인력 개발, 그리고</p> <p>(f) 학계, 연구 및 기업 간의 협업 사이버 보안 연구와 개발 및 혁신 프로젝트</p>
한-싱 DPA	<p>14.22조 사이버 보안 협력</p> <p>1. 양 당사국은 전세계적인 번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p> <p>2. 양 당사국은 더 나아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가.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p> <p>나. 양 당사국의 전자적 망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 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 그리고</p> <p>다. 청년층 연수 및 육성, 다양성 제고 및 상호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이니셔티브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p>
RCEP	<p>제12.13조 사이버 보안</p> <p>당사자들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p> <p>가.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그리고</p> <p>나.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안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사용</p>
CPTPP협정	<p>제14.16조: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문제에 관한 협력</p> <p>양 당사자는 다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p> <p>(a) 각 당사자의 담당 기관의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것</p> <p>(b)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치는 악의적 침투 또는 악성 코드의 배포를 식별하고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위해 현행 협업 체제를 이용하는 것</p>

*밑줄 친 부분은 다른 협정들과 비교하여 당해 협정안에만 포함된 조문을 가리킴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iii) 평가

-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싱-호, DEPA, 영-싱, 한-싱)에서는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함. 이를 위해 싱가포르 기타결 협정에서는 모두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 국가기관의 역량 구축과 당사국들의 전자적 망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 코드 유포를 적발하고 경감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수립, 이용 및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싱가포르 주도 협정(싱-호, DEPA, 영-싱, 한-싱)에서는 추가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인력 개발 중요성도 언급함. 이밖에도 영-싱 협정에서는 국내 사이버 공간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사물인터넷 기기의 기본 보안 표준에 대한 상호 인정의 확립 등의 중요성을 명시함

5. 디지털 무역 협력

(1) 협력 규정의 의의

- 협력 규정이라 함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규정을 가리키며, 이는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하는 연성법 형태를 가짐이 특징임. 협력 의제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달려 있어 의제 범위에 있어 제한은 없음. 다만,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협정의 체결 효과를 보완하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됨⁸²⁾

(2)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협력 규정 현황 개관

[표 25]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협력 규정 현황 개관

대상협정/ 규율대상	호주-싱 DEA (2020.8)	DEPA (2021.6)	영-싱 DEA (2021.6)	한-싱 DPA (2021.12)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2020)	CPTPP 14장 전자상거래 (2018)
협력 일반	제4조 협력	-	제8.61-W조 협력 - 분야별 협력의제를 상세히 열기	제14.33조 협력	제12.4조 협력	제14.15조: 협력 - 분야별 협력의제를 상세히 열기

82) 고준성, FTA 모델안 도출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Ⅰ): 협력의제 모델규정 모색, 한국법제연구원, 2013, p.127.

대상협정/ 규율대상	호주-싱 DEA (2020.8)	DEPA (2021.6)	영-싱 DEA (2021.6)	한-싱 DPA (2021.12)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2020)	CPTPP 14장 전자상거래 (2018)
데이터 혁신	제26조 데이터 혁신 - 데이터 혁신 협력 과제 제시	제9.4조 데이터 혁신	제8.61-조 데이터 혁신	제14.25조 데이터 혁신 - 데이터 혁신 지원을 위한 협력 과제 제시	-	-
디지털신원	제29조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IES) - 디지털 신원의 호환성 초진을 위한 협력 과제 제시	모듈7 1항-2항 - 국가의 디지털 신원 체제의 상호 운용성 증진을 협력 과제 제시	제8.61-S조 디지털 신원	14.30조 [노력규정]	-	-
인공지능	제31조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 AI 기술 및 그 거버넌스 관련 연구 및 산업 관행의 공유,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 및 채택 촉진 등 - AI 기술의 이용을 위한 윤리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 인식 및 이를 위한 협력 과제 제시	제8.2조 : 인공지능 - AI 기술의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적 및 거버넌스 개발 중요성 인정 - AI 기술의 이용을 위한 윤리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 인식 및 이를 위한 협력 과제 제시 - AI 거버넌스 틀 채택 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지침 고려	제8.6-R조 인공지능과 신흥기술 디지털 경제 내에서 AI 기술의 사용과 채택 중요성 인정	제14.28조 인공지능 - AI 기술의 이용을 위한 윤리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 인식 및 이를 위한 협력 과제 제시	-	-

대상협정/ 규율대상	호주-싱 DEA (2020.8)	DEPA (2021.6)	영-싱 DEA (2021.6)	한-싱 DPA (2021.12)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2020)	CPTPP 14장 전자상거래 (2018)
핀테크 협력	제32조 핀테크(FinTech) 및 레그테크(RegTech) 협력 - 각자의 핀테크 기업과 레그테크 기업 및 산업 기관 간의 협업 촉진 -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사용과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 권장 - 관련 국제포럼에서 협력 - 오픈뱅킹 표준 개발 협력	제8.1조 : 금융기술협력 - 핀테크 분야 기업 간 협력 촉진 - 기업/금융 분야 핀테크 솔루션 개발 촉진 - 핀테크에서 기업가 정신/창업 인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력 장려	제8.53조 신규 금융서비스 1. 각 당사자는 <u>타방 당사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u> 자국의 유사한 <u>금융서비스 공급자가</u>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u>모든 신규 금융서비스를</u> <u>제공하도록 허용한다.</u> 2. 양 당사자는 핀테크와 레그테크와 같은 분야에서 ---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식, 경험 및 발전을 협력 공유하도록 노력	제14.29조 핀테크협력 - 기업/금융 분야 핀테크 솔루션 개발 촉진 - 핀테크에서 기업가 정신/창업 인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력 장려	-	-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3) 평가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협력 조문을 통해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정, 정책, 집행 및 준수 메카니즘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과 공유 그리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자 접근에 대한 당사국 간 정보 교환 또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자율 규제 방법 개발 장려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협력 일반은 규정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RCEP 및 CPTPP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임
- 그런데 싱가포르 주도 협정에서는 이밖에도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및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이 주목됨. 특히, 영-싱 협정상 핀테크 협력 조항에서는 자국에서 허용하는

모든 신규 금융서비스의 경우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협력 규정의 경우 권고조항으로 규정되는 점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화의 활성화에 대한 매우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6.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1)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정 이슈 규정 현황 개관

- 여기에서의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정 이슈라 함은 그 자체로서는 디지털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당해 이슈가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를 가리킨다.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이러한 특정 이슈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26]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정 이슈 현황 개관

대상 협정/ 규율대상	호주-싱 DEA (2020.8)	DEPA (2021.6)	영-싱 DEA (2021.6)	한-싱 DPA (2021.12)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2020)	CPTPP 14장 전자상거래 (2018)
디지털 무역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제30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는 표준 개발 노력, 의견 교환, 협력 - 디지털 무역 지원 위해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 촉진하는 정보 교환 노력	-	제8.61-D조 표준 및 적합성 평가 - 디지털 무역과 관련 표준 개발 촉진 위해 국제포럼에서 상호이해관계 분야 참여 및 협력 - 디지털 경제 관련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개발 및 적용 관련 모범 관행 교환 - 디지털 무역 관련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제14.31조 디지털 경제를 위한 표준,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 - 디지털 무역과 관련 표준 개발 촉진 위해 국제포럼에서 상호이해관계 분야 참여 및 협력 - 적합성 평가 결과의 국경 간 인정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이 디지털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	-	-

대상 협정/ 규율대상	호주-싱 DEA (2020.8)	DEPA (2021.6)	영-싱 DEA (2021.6)	한-싱 DPA (2021.12)	RCEP 제12장 전자상거래 (2020)	CPTPP 14장 전자상거래 (2018)
경쟁 (정책)	제16조 경쟁 정책에 관한 협력 -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경쟁법의 집행과 경쟁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경험 공유 인식 및 기술협력 -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해 통보, 협의 및 정보 교환과 각자의 법규에 따라 협력	제8.4조 : 경쟁 정책에 관한 협력 (호-싱과 상응규정)	제8.61-U조 경쟁 정책에 관한 협력 (호-싱과 상응규정)	제14.27조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 경쟁법의 집행과 경쟁 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경험 공유 인식 및 협력 - 디지털 시장의 경쟁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적절히 협력	-	-
중소기업 (스타업)	제36조 중소기업 -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교역 및 투자 기회 증진 위한 과제 열기	제10.2조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제10.4조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제8.61-Q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기업들의 디지털 경제 참여 장벽 해결위한 과제 열기	제14.32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 디지털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교역 및 투자 기회 증진 위한 과제 열기	-	-

출처: 필자 번역본을 기초로 정리

(2) 평가

- 상술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특정 이슈의 경우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이슈로서 첫째, DEPA를 제외한 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 표준 및 적합성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오늘날 상품무역에 있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관세나 통관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보다 수출입 거래 당사자에게 보다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에 있어 그러한 TBT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둘째,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 성격상 선도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기 쉬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 이슈를 규정함으로써 당사국들의 경쟁 정책 당국간의 협력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셋째,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나 자체 역량이 뒤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것을 디지털 정책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써 인식하고 있고, 이 점에서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무역에서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요컨대,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교역 및 기회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IV.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 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및 디지털 경제협정 목표와 관련

-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디지털 무역 협상 추진 배경
 - 2017년 2월 미래경제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7대 장기 성장전략 중 하나로써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등 싱가포르 정부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자 디지털 역량 구축을 국가의 핵심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설정하고 추진해 왔음
 -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무역 채널이 등장할 것이라면서, 이전과는 매우 다른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싱가포르 정책 입안가들은 무역의 디지털화(the digitalisation of trade)에서 그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 대안이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국경 간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디지털 경제가 미래라고 인식함

-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의 목표
 -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s: DEA)의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싱가포르 기업들이 해외 파트너들과 국경을 넘어 디지털로 보다 막힘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결하고자 함
 - 즉, 싱가포르 DEA의 목표는 (i) 디지털 규칙 및 표준을 조정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공동 프레임워크 및 규칙을 수립하고, (ii) 국경 간 데이터의 이전을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며, 더불어 (iii) 디지털 신원과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혁신과 같은 영역에서 싱가포르의 경제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것임

2.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 및 관련 법제와 관련

- 싱가포르 디지털 정책 기조 및 전략
 - 2014년 출범한 싱가포르의 스마트 국가 이니셔티브는 (i) 디지털 경제, (ii) 디지털 정부 및 (iii) 디지털 사회라는 3개의 기둥에 기초하는데,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는 싱가포르 기업과 근로자들이 디지털화에 따른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구축해 주기 위한 것임

- 2017년 2월 7대 장기 성장전략의 하나로써 제시한 “우수한 디지털 역량 구축(Build strong digital capabilities)”을 위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전문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지원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을 구축하며, 자산으로써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함
 - 디지털 기술이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번창하고 성장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개발청(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2017년 “중소기업 디지털화(Go Digital)”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을 목표로써 제시함
 - 2020년 6월 출범한 Grow Digital(디지털 성장)은 중소기업이 기업 간(B2B) 및 기업과 소비자 간(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참여함으로써 법인 설립 없이 해외 판매를 가능하게 해 줌
-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 법제 및 정책
 - 싱가포르 정부는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i) 공공부문의 데이터 관리, (ii) 제3자에 의한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그리고 (iii) 데이터 보호 트러스트 마크 인증을 통해 강력한 개인 데이터 보호법과 정책을 시행 중에 있음

3.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과 관련

- 싱가포르는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써 “싱가포르형 디지털 경제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s: DEA)”을 적극 추진하여 상-호주 DEA,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영국-싱 DEA 및 한-싱 DPA(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등 4건의 협정을 타결하였고, 디지털 무역 규정을 포함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및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가입하였음

(1) 디지털 제품무역

-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과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를 규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자국 주도의 DEA를 추진하면서 그 일부로써 암호 기법 사용 ICT 제품 규정을 일관되게 도입하여 당사자들 간에 있어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교역 확대가 기대되고, 더불어 소스 코드 관련 지재산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2) 디지털 무역 기반 및 디지털 무역원활화

-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 국내법 체계의 수립 요구 이외에 디지털 무역원활화를 위해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제도, 종이없는 무역, 특급 배송 및 물류 등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표 27]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기반 및 원활화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국내	인터넷	전자	전자	전자	종이	특송	물류
		전자거래 체계	접근·이용 원칙	인증·전자 서명	송장	지급	없는 무역	화물	
싱가포르 주도협정	호-싱 DEA	✓		✓	✓	✓	✓	✓	
	DEPA	✓	✓		✓	✓	✓	✓	✓
	영-싱 DEA	✓	✓	✓	✓	✓	✓		✓
	한-싱 DPA	✓	✓	✓	✓	✓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		✓			✓		
	CPTPP	✓	✓	✓			✓		

출처: 필자 작성

(3) 디지털 서비스·데이터 무역

(i)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

-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디지털 서비스 및 데이터 무역 자유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개인정보]의 국경 간 이전의 보장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자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제한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대상 협정에서는 그러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 의무에 대한 적용 예외로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다만,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이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 바, RCEP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치라고 규정하여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함

-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신만의 규제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가 국가 본연의 주권적 권리라는 시각에 기초한 것임

- 이에 비해 미국 참여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와 미-일 디지털협정에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는 데이터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제하는 국가주권 주장이 사실상 무용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
- 한-싱 협정에서는 그러한 당사자 자신만의 규제 요건 인정에 있어 그 요건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추가 단서를 부가하고 있어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보장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 RCEP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ii) 컴퓨팅 설비의 위치

- 싱가포르 타결 모든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데이터 현지화 조치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적용 대상인에게 당해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당사자 영역에서 컴퓨팅 설비를 사용하거나 두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함
- RCEP을 제외한 기타 협정에서는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요건 부과 금지에 대한 적용 예외로써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a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이나 유지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다만, RCEP에서는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단을 당사자가 하도록 하는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하여 남용의 가능성 존재함
- 싱가포르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당사국은 각 당사국이 통신의 보안 및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자국만의 규제 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국가의 통신 주권을 확인하는 것임
- RCEP에서는 당사자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조치를 예외로써 허용하는 소위 ‘자기판단’(self-judging) 조항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치는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위험이 존재함

- 싱가포르의 주도 및 참여 디지털협정에서와 달리 USMCA와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는 당사자의 컴퓨팅 설비의 사용에 관한 규제 요건 부과 인정 조항이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예외 조치 허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크게 대비되는데, 이는 미국 참여 협정에서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미국의 데이터 기반 기업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임

(iii)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 상대적으로 금융서비스가 발달한 싱가포르는 호주-싱가포르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에 관한 규정을 처음 도입하면서 금융규제 당국이 적용 대상 금융서비스공급자의 당사국의 영토 밖에서 이용하거나 영토 밖에 둔 금융서비스 컴퓨팅 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목적에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이며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 보장을 전제로 그러한 컴퓨팅 설비의 영토 내에서의 이용이나 영토 내에 둘 것을 조건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 부과 금지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미국 주도 USMCA와 미-일 디지털협정의 관련 조문을 기초로 한 것임
- 한-싱 디지털협정에서는 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 요건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의무조항 대신에 이를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개발, 장려한다는 노력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iv) 공공 부문 데이터 접근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공개된 정부 정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당사국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정부 정보의 경우 검색 및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공개된 형식이어야 할 것과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 등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4) 디지털 무역 보호 및 보안

- 상-호주 협정을 제외한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온라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의무조항으로써 싱가포르 타결 협정에서는 각 당사자가 전자상거래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나 잠재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관행으로부터 그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정을 채택,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DEPA에서는 동법규 안에 소비자가 품질에 불만족하는 경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도록 요구함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의 경우 협정 모두에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사람(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법적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CPTPP를 제외한 모든 협정에서 각 당사국은 전자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한 인에게 자국이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규정
- 싱가포르의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예외없이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의무조항의 경우 각 당사국은 전자 주소로 발송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그러한 메시지 제공자에게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와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것을 요구함. 또한 각 당사자는 이행해야 되는 자신의 조치를 미준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하여 배상 청구 수단을 제공할 것도 규정
- 싱가포르 주도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싱-호, DEPA, 영-싱, 한-싱)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사이버 보안이 디지털 경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규정

(5) 디지털 무역 협력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협력 일반 규정 이외에도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및 핀테크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핵심 과제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 하면서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영-싱 협정상 핀테크 협력 조항에서는 자국에서 허용하는 모든 신규 금융서비스의 경우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이례적임

[표 28]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협력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협력 일반	데이터 혁신	디지털 신원	인공지능	핀테크 협력
싱가포르 주도협정	호-싱 DEA	✓	✓	✓	✓	✓
	DEPA		✓	✓	✓	✓
	영-싱 DEA	✓	✓	✓	✓	✓
	한-싱 DPA	✓	✓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				
	CPTPP	✓				

출처: 필자 작성

(6)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 싱가포르 주도 디지털 무역협정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특정 이슈(디지털무역 표준 및 적합성 평가, 경쟁 및 중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무역 교역 및 기회 확대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29] 싱가포르 기타결 디지털 무역협정에서의 디지털 무역 관련 특정 이슈 규정 현황

√: 당해 규정이 있음

협정	대상 규정	디지털무역 표준 및 적합성평가	경쟁(정책)	중소기업 (스타업)
싱가포르 주도협정	호-싱 DEA	√	√	√
	DEPA		√	√
	영-싱 DEA	√	√	√
	한-싱 DPA	√	√	√
싱가포르 참여협정	RCEP			
	CPTPP			

출처: 필자 작성

- 생각건대 국가의 디지털 정책 및 법은 국가들 간에 상당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이는 각국이 가진 디지털 시장의 특성 및 환경 등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들의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에도 반영되기 마련임
 -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미국 주도하에 추진되어 오고 있는 디지털 무역협정 추이 속에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정책(가령, 디지털 무역원활화, AI·핀테크 등 디지털 무역 협력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등 이슈)과 자국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수준(가령,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전에 대한 규제 권한 명시 등) 그리고 자국 디지털 산업의 이익(금융서비스 컴퓨팅 설비의 위치 등)을 반영하는 ‘포괄적이면서 독자적인 디지털 경제협정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에도 많은 참고와 시사점을 제공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KITA 통상뉴스, 디지털 무역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싱가포르, 2020
- SHIN&KIM Legal Update, 2018년 5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시행 예고, 2018
- 고준성, 미국의 디지털 무역관련 법정책 분석, 법제연구원, 2020
- 김미림, 싱가포르의 성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기초자료 18-25, 2018
- 김상배, 초국적 데이터 유통과 정보주권; 국가주권 변환의 프레임 경쟁, in: 이승주 편, 사이버 공간의 국제정치경제, 2018
- 이종석,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지연 이유와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정책에의 시사점, 물류 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9
- 이주형,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과 예외규정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3호, 2019

[외국문헌]

- C&M International, "Benefits of the APEC Cross-Border Privacy Rules," 2018
- Chabinsky Steven & Pittman F. Paul, Chapter 46 USA, in: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Guide to: Data Protection 2019, glg(Global Legal Group), 2019
- CRS,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2017
- CRS,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2019
- Davidson Alan B, "The Commerce Department's Digital Economy Agenda," 2015
- Dou Eva, "China's Great Firewall Gets Taller,"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 Fefer Rachel F.,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Testimony: The Need for U.S. Leadership on Digital Trade, 2018
- Froman Ambassador Michael B.G., "Getting Trade Right," Democracy Journal, 2015
- Inside U.S. Trade, U.S. pulls out of OECD talks, will levy tariffs on those imposing digital taxes, 2020

Inside U.S. Trade, WTO members continue work toward consolidated e-commerce text, 2020

Lee-Makiyama M.F. Ferracane, H. & Martel E. van der, Digital Trade Restrictiveness Index, ECIPE & DTE(이하 'Ferracane etc. '), Figure 3.6: Cumulative Number of Data Localization Measures(1961-2016)

Morris John B. Jr., Twenty Years after the Birth of the Modern Internet, U.S. Policies Continue to Help the Internet Grow and Thrive, 2015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OECD Publishing, 2017

Smart Nation Singapore, Government's Personal Data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TITLE 1.81.5.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2018 [1798.100 - 1798.199] (Title 1.81.5 added by Stats. 2018, Ch. 55, Sec. 3.)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Table 3.1. U.S. Trade in ICT and Potentially ICTEnabled Services, 2018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Digital Trade in the U.S. and Global Economies, Part 1, Publication No: 4415, Investigation No: 332-531, 2013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Global Digital Trade 1: Market Opportunities and Key Foreign Trade Restrictions, 2017

WT/MIN(22)/32, WT/L/1143,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MINISTERIAL DECISION, 2022

김미림,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 Pioneers of the next generation"Γ, Committee on the Future EconomyJ (CFE), 2017

[인터넷 검색 자료]

MITI Singapore, What are Digital Economy Agreements (DEAs)?,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MITI Singapore, Why are DEAs important for Singapore?,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MITI Singapore, Why are DEAs important for Singapore? and How can businesses benefit from the DEAs?, <https://www.mti.gov.sg/Trade/Digital-Economy-Agreements>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Singapore IMDA, SMEs Go Digital Factsheet, 2022.3, <https://www.imda.gov.sg/SMEsGoDigital>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X.VAL.ICTG.ZS.UN> What is data localization?, <https://www.cloudflare.com/ko-kr/learning/privacy/what-is-data-localization/>

<https://www.emarketer.com/newsroom/index.php/2019-china-to-surpass-us-in-total-retail-sales/>

SINGAPORE SMART NATION INITIATIVES AND POSSIBLE OPPORTUNITIES, <https://www.scs.org.sg/articles/smart-nation-singapore>

FTC, Privacy Shield, <https://www.ftc.gov/tips-advice/business-center/privacy-and-security/privacy-shield>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digital-policy/>

<https://www.internetworldstats.com/top20.htm>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C%8C%EC%9D%B4%EC%9B%A8%EC%96%B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1_hanafax&logNo=9018919440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https://unctad.org/en/Pages/DTL/STI_and_ICTs/ICT4D-Legislation/eCom-Transactions-Laws.aspx

<https://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ReportId=15850>

https://unctad.org/en/Pages/DTL/STI_and_ICTs/ICT4D-Legislation/eCom-Global-Legislation.aspx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2-508-342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2-508-342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united-states-mexico-canada-agreement/agreement-between>

<https://ustr.gov/countries-regions/japan-korea-apec/japan/us-japan-trade-agreement-negotiations/us-japan-digital-trade-agreement-text>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trans-pacific-partnership/tpp-full-text>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fact-sheets/2019/march/fact-sheet-2019-national-trade-estimate>

<https://www.international.gc.ca/trade-commerce/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tpp-ptp/text-texte/toc-tdm.aspx?lang=eng>; WTO-FTA, <http://wtocenter.vn/chuyen-de/12782-full-text-of-cptpp>



GLOBAL LEGAL ISSUES

싱가포르의 디지털 무역 관련 법·정책 분석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트레이드 포럼 위원장



발행일 2022. 11. 23.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861-0300 Fax. 044)868-9913

ISBN 979-11-92325-65-1(95360)

